

SW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A Basic Survey of Subordinate Legislation for SW Promotion Act

이현승

2020. 01.

이 보고서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 구 기 관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제책임자 : 이현승 책임연구원

참 여 기 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1. SW진흥법 입법과정 개관	1
2. SW진흥법 하위법령과 표준계약서	2
제2절 연구목적	4
1. SW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대비	4
2. SW사업 표준계약서 기초조사	5
제2장 SW진흥법 하위법령	6
제1절 SW진흥법 입법과정 개관	6
1. 국회심의과정	6
2. SW진흥법 주요 변경 내용	12
제2절 SW진흥법 하위법령 기초연구	21
1. SW진흥법 하위법령 개관	21
2. 신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과 참조입법례	24
3. SW진흥법 고시 관련	44
제3장 SW사업 표준계약서	45
제1절 SW사업 표준계약서 관련 중점연구사항	45
1. SW사업 계약의 개요	45
2. 기존 SW사업 표준계약서 현황	46
3. 중점연구사항	48

제2절 기존 표준계약서 분석	49
1. SW 유관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49
2. 타 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52
제3절 SW사업 계약관행 분석	55
1. 계약내용과 이행과정 관련	56
2. 검수와 지체상금	62
3. 지식재산권과 하자담보	67
제4절 표준계약서 개발 고려사항	71
1. 표준계약서 체계와 원칙	71
2. 주요 정부 정책 반영	74
3. 기존 표준계약서와 계약관행 분석 결과	75
4. SW사업 표준계약서의 전체구조 비교	76
제5절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표준계약서 등	78
1. 총칙	79
2. 과업내용과 계약변경	88
3. 대금 관련	95
4. 작업환경과 과업이행	101
5. 납품과 검수	112
6. 품질보증과 하자보수	123
7. 지식재산 및 기술지원 등	127
8. 계약상 분쟁해결	139
9. 상용SW 관련 특례조문	150
10. 임베디드SW 관련 특례조문	152

제6절 정보시스템 및 상용SW 유지관리사업	155
1. 과업과 대금 관련	156
2. 작업환경과 과업이행	161
제4장 결론	165
부록 1 - SW사업 표준계약서 초안 조문비교표(SW개발 분야)	167
부록 2 - SW사업 표준계약서 초안 조문비교표(SW유지관리 분야)	205

표 목 차

〈표 1-1〉 행정규칙 종류	2
〈표 2-1〉 검토보고서 수정의견	6
〈표 2-2〉 허위표시 처벌규정 참조례	8
〈표 2-3〉 SW개발보안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11
〈표 2-4〉 국회제출안과 SW진흥법의 수정조문 대비표	12
〈표 2-5〉 정의조항 변경내용	14
〈표 2-6〉 수정조문 일람표(제4장까지)	14
〈표 2-7〉 수정조문 일람표(제5장)	17
〈표 2-8〉 수정조문 일람표(제7장)	19
〈표 2-9〉 현행 SW산업진흥법 행정규칙	22
〈표 2-10〉 SW진흥법 하위법령 중 주요 신규조문	22
〈표 2-11〉 지역 ICT산업기반 조성사업 개요	24
〈표 2-12〉 국가기관등 규정 변화	26
〈표 2-13〉 SW기술자경력확인제 조문대비표	28
〈표 2-14〉 SW사업자 실적관리 조문대비표	29
〈표 2-15〉 도급계약 서면기재 필수사항 참조 입법례	32
〈표 2-16〉 민간투자법 대상사업 요건과 추진방식	34
〈표 2-17〉 SW사업 영향평가 조문대비표	36
〈표 2-18〉 SW사업 계약체결 관련 조문대비표	38
〈표 2-19〉 SW산출물 활용 관련 조문대비표	40
〈표 2-20〉 업무위탁 관련 시행령 참조입법례	42
〈표 2-21〉 출연금 환수 참조입법례	43

〈표 2-22〉 SW산업진흥법 고시 개선의견	44
〈표 3-1〉 SW사업 관련 기존 표준계약서 현황과 연구범위	47
〈표 3-2〉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 특징	50
〈표 3-3〉 게임개발 표준계약서 개요	51
〈표 3-4〉 연구개발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53
〈표 3-5〉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53
〈표 3-6〉 이러닝 콘텐츠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54
〈표 3-7〉 이야기 제작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55
〈표 3-8〉 불명확한 과업범위 조항 사례	56
〈표 3-9〉 과업변경비용 수주자 부담 조항 사례	58
〈표 3-10〉 불공정한 계약해지 조항 사례	60
〈표 3-11〉 투입인력 관리조항 사례	62
〈표 3-12〉 불공정한 검수 조항 사례	63
〈표 3-13〉 지체상금 산정 관련 계약서 사례	65
〈표 3-14〉 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사례	67
〈표 3-15〉 부당한 하자담보 책임범위 사례	70
〈표 3-16〉 SW 관련 제작, 서비스, 유통 계약 분류	71
〈표 3-17〉 SW사업 표준계약서 구성 방식 비교	71
〈표 3-18〉 SW사업 표준계약서 구성 방식 선호도 조사	72
〈표 3-19〉 공공SW사업 혁신방안 주요 내용	75
〈표 3-20〉 기존 표준계약서 주요 참조 내용	76
〈표 3-21〉 SW사업 표준계약서 조문 구성 현황	77
〈표 3-22〉 목적조항 관련 참조사례	80

〈표 3-23〉 정의 조항 참조사례	82
〈표 3-24〉 과업내용 관련 참조사례	89
〈표 3-25〉 대금지급 참조사례	96
〈표 3-26〉 계약이행보증 관련 참조사례	99
〈표 3-27〉 작업장소 참조사례	104
〈표 3-28〉 인력관리 참조법령	107
〈표 3-29〉 인력관리 참조사례	107
〈표 3-30〉 하도급 참조사례	111
〈표 3-31〉 납품과 검수 참조법령	115
〈표 3-32〉 납품과 검수 참조사례	116
〈표 3-33〉 지체상금 참조법령	120
〈표 3-34〉 검사 참조사례	121
〈표 3-35〉 하자보수 참조법령	124
〈표 3-36〉 하자보수 참조사례	125
〈표 3-37〉 지식재산권 참조법령	129
〈표 3-38〉 지식재산권 참조사례	130
〈표 3-39〉 기술자료 및 비밀유지 참조법령	134
〈표 3-40〉 기술자료 및 임치제도 참조사례	136
〈표 3-41〉 비밀유지 참조사례	137
〈표 3-42〉 계약해지 참조법령	142
〈표 3-43〉 손해배상 참조법령	145
〈표 3-44〉 손해배상 참조사례	147
〈표 3-45〉 이의 및 분쟁해결 참조사례	149

그림 목 차

[그림 1-1] 현행 SW산업진흥법 법령체계도	3
---------------------------------	---

요 약 문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 말에는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식적인 하위법령은 아니지만 민간부문의 SW사업에 공정계약의 관행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상용SW와 정보시스템 분야의 개발/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표준계약서 4종, 임베디드SW 개발사업 표준계약서 1종을 개발하였다.

SW진흥법은 SW산업진흥법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그래서 현행 SW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들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조문들 위주로 하위법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SW진흥법 시행 시점에 무난하게 모든 하위법령들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SW사업 표준계약서는 상용SW, 정보시스템, 임베디드SW 분야 위주로 공정위의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중심으로 다른 분야의 표준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개발되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주로 발주자가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을 위한 것이어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원도급 관계를 전제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다. SW개발 또는 유지관리의 도급사업에서 불공정 사례들을 충실히 수집한 후 이의 발생을 방지하는 조항들을 충실히 작성했으며, SW사업에서 유용성이 낮은 내용들은 삭제하여 표준계약서를 간소화하였다. 이 표준계약서들을 토대로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보다 나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A Basic Survey of Subordinate Legislation for SW Promotion Act

The SW Promotion Act may be enforced in the end of year 2020, since the full amendment task force team of the SW Industry Promotion Act started at the August of year 2017. This report contains the simple direction of subordinate legislation like presidential decrees and public notices for the newly fully revised SW Promotion Act. In addition, although it is not an official statute, this report has some contract examples - 4 contract examples for the SI(System Integration) and Package(off-the-shelf) SW related to development and management and 1 contract example for embedded SW development projects. These are for newly establishing fair practices in the private sector of SW industry.

The SW Promotion Act Bill was entirely amended by adding new contents while retaining the most contents of the SW Industry Promotion Act. Therefore, if the newly created contents and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are combined, while maintaining the sub-statutes of the current SW Industry Promotion Act as a whole, then all subordinate statutes can be enacted and implemented easily at the enforcement date of the SW Promotion Act.

Standard contract examples for SW business are written by referring to existing standard contract examples and related statutes in other areas, mainly based on standard subcontract examples for SW business by the Korean FTC, for the areas - Package SW, SI and embedded SW. The

Korean FTC's standard subcontract examples are intend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when the person placing an original order exists separately, so this report places th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me contractor and the person placing an original order. The standard contract examples are simpler than the Korean FTC's because of removing unnecessary articles and clauses from SW projects. However, these have useful provisions to prevent typical unfair cases in SW development or maintenance project from occurring by collecting and analysing them faithfully. Better standard contract example for SW business can be written if more opinions of stakeholders are collected based on thes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1. SW진흥법 입법과정 개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부터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 TF를 꾸려서 전부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2017년 12월 20일 자체 공청회를 거쳐 2018년 3월 법률 명칭을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바꾸며, 93개 조로 구성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입법예고안’이라 한다)을 입법예고하였다. 이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완료하면서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 11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73개조로 구성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제출안’ 또는 ‘개정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필자 등은 2019년 5월 현행SW산업진흥법, 입법예고안, 국회제출안을 비교분석한 연구보고서(이하 ‘비교분석보고서’라 한다)를 발간한 바 있다.¹⁾

국회제출안은 2019년 3월 14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²⁾, 국회법 제58조제6항³⁾에 따라 같은 해 7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⁴⁾ 또한 박선숙 의원은 SW개발보안의 진흥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⁵⁾, 상임위는 두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편의상 ‘SW진흥법’이라 한다)을 만들어 2020년 1월 30일 수정의결하였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

1) 이현승 외 2인(2018), “SW진흥법 입법지원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016944번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L1J8X1N1G3G0Y1T4N3C4P5U0Z8H8U6

3)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디넷, 2019. 7. 25.자 기사 “SW산업진흥법 19년만에 전면개정 눈앞”

<http://www.zdnet.co.kr/view/?no=20190725195926>

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020936번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Y9Q0J6I1V2Q1O5Q3E6Y4J5Y2O6M5

사를 기다리고 있다. 2017년 8월 전면개정 TF가 결성된 후부터 약 30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2. SW진흥법 하위법령과 표준계약서

SW진흥법이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경우 2020년 말에 시행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하위법령들도 법 시행에 맞춰 전부개정될 필요가 있다. 하위법령은 통상 대통령령인 시행령, 부령인 시행규칙, 행정규칙인 훈령, 예규, 고시를 말하며, 현행 SW산업진흥법은 [그림 1-1] 과 같은 법령체계를 이루고 있고 관련 행정규칙은 총 19개이다.

〈표 1-1〉 행정규칙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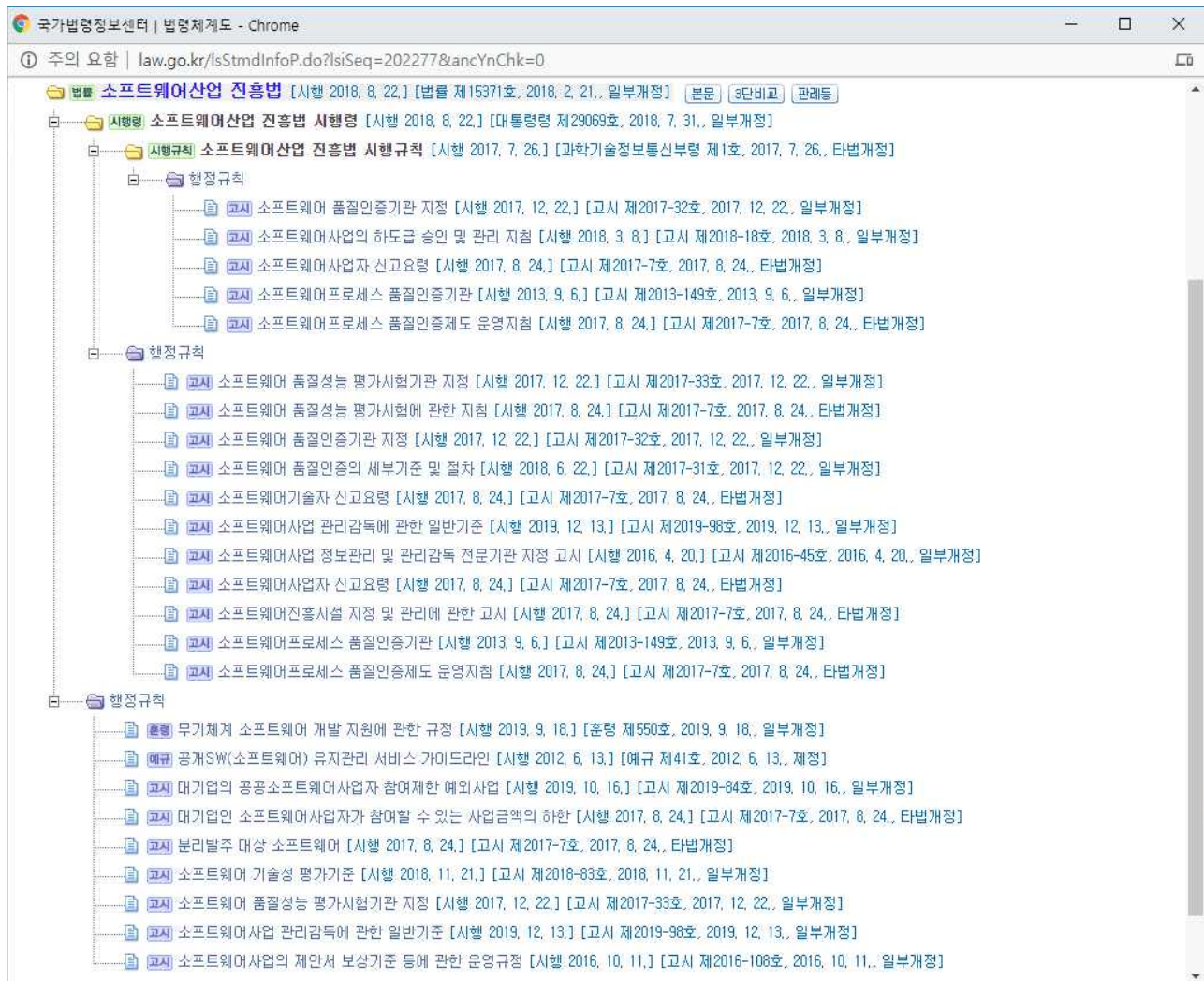
분류	내용
훈령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훈령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정함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통상적으로 제명을 "○○지침"으로 하여 발령하는 경우가 많으나, "○○예규", "○○규정", "○○ 규칙", "○○기준", "○○요령" 등으로 하여 발령하는 경우도 많음
고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그 내용에 따라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인 경우에만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고시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기 어려움 법령에서 "...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로 규정한 경우
공고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해야 한다."로 규정

* 출처 : 법제처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참고로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법규성이 없으나,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의 효력을 갖게 된다.⁶⁾ 현행 SW산업진흥법에서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구성하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고시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1] 현행 SW산업진흥법 법령체계도



또한 SW진흥법 내의 신설조문인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제4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SW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6) 법제처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의 개요” 참조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54&astClsCd=CF0101>

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할 의무가 있는바, SW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목적

1. SW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대비

하위법령은 법률안 보다는 간소하지만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SW진흥법 시행예정일 보다 수개월 전에 초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개정 공청회는 법률상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각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SW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도 정부입법절차 진행 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공청회의 법률상 정의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⁷⁾로, 보통 법령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실시된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이 대부분 SW진흥법의 하위법령으로 존속하더라도 어디까지나 SW진흥법의 하위법령은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에 해당하며, 그 밖에 SW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회 계류중인 SW진흥법의 내용을 국회제출안과 시행예정법안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한 후, SW진흥법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하위법령의 주요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이전에 발간한 비교분석보고서에서도 국회제출안 기준으로 하위법령에 신규로 위임하는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을 기준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될 사항을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하위법령 조문들의 방향성과 참조입법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7)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 참조

2. SW사업 표준계약서 기초조사

통상 하위법령은 법 시행일 이전에 준비되어야 하는데 반해, SW진흥법 제38조 제4항에 명시된 SW사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그 사용권장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시행예정일에 맞춰 공표될 시급성은 하위법령보다는 낮다. 특히 수많은 SW사업이 추진되는 현실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SW산업 분야의 시장참여자들의 행동과 습관을 바꿔나가야 하는 문제이므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SW사업의 표준계약서의 초안을 마련하려면, SW사업의 각 분야의 계약 관행과 불공정사례들을 조사하고, 각 산업분야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개발 보급한 기존 표준계약서들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보고서 제3장에서는 SW사업 표준계약서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상용SW, 정보시스템, 임베디드SW 분야의 표준계약서의 초안들을 제시하였다.

제2장 SW진흥법 하위법령

제1절 SW진흥법 입법과정 개관

1. 국회심의과정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2019. 3. 14.)

국회제출안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3월 14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였다. 이때 공개된 검토보고서에서는 법개정 취지에 찬성 입장이라는 전제 아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표 2-1>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표 2-1> 검토보고서 수정의견

세분류	검토보고서 내용 발췌 정리
다른 법률 규정 이관	SW진흥법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일반법이고 정보통신융합법을 비롯한 하위법령에 편재되어 있던 사항들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융합법에 규정된 사항 중 일부를 추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구체적으로 정보통신융합법 제24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운영'의 경우 이는 소프트웨어 정책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 제8조8)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법체계의 완결성 및 정합성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운영'의 이관을 검토
벌칙 조항 신설 검토	소프트웨어 각 분야에서의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기관에의 업무 위탁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에는 위탁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리 규정(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이나 부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처벌 규정(벌칙, 양벌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이행력을 높이고 활동 주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정보통신융합법」및「정보통신산업 진흥법」등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관리 및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비밀 누설의 금지 - 벌칙 및 양벌규정
정의 조항	정의규정의 순서를 참조하는 법조문 순서로 정리할 필요 있음
지역별	개정안 제9조에서 규정하는 진흥기관은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기관 중에서

세분류	검토보고서 내용 발췌 정리
지역SW산업 진흥기관	법률안 제9조제4항은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산업진흥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므로, 해당 문구를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
SW진흥시설과 SW진흥단지	개정안 제11조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과 제12조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는 규정하는 사항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법문의 체계 및 표현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일치시킬 필요
SW창업 활성화	개정안 제1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
SW전문교육기관 설치 운영	1. 개정안 제23조의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소프트웨어종합학교에 관한 규정은 삭제할 필요 2. 개정안 제23조제2항에서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임입법의 정도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융합법」의 규정에 준하여 위임의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
SW안전 확보	개정안 제29조 제2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재량사항인데, 이를 참조하는 후속사항인 제3항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실행력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제2항을 의무사항으로 수정할 필요
공정계약의 원칙	개정안 제37조 제1항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하도급계약에도 공정계약의 원칙이 적용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을 의무사항으로 수정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
하도급 제한 등	개정안 제50조제1항은 하나의 조항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조항으로 분리할 필요
국가기관등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개정안 제53조는 제1항에 현행법 제20조 상용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현행법 제15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관한 규정인 제2항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한 규정인 제1항의 순서를 서로 바꿀 필요
출연금 환수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야 하므로 개정안 제73조의 출연금 환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야 함 2. 개정안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금 지원도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출연금 환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3. 출연금 환수는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출연금 환수 규정에 환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

8) 국회제출안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조문의 이관과 삭제, 그 밖에 법률 문언과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은 타당하고 보여진다. 여기서는 별칙 관련 수정의견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비교분석보고서에서 정부입법절차 중 실시되는 부패영향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되기 때문에 부패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SW진흥법 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해야 하는 공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 종사자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청렴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준수하도록 다양한 규제가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밀누설 금지, 뇌물죄로 대표되는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양벌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탁기관과 그 임직원들을 제외하고 SW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SW기업 등에 적용되는 별칙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SW진흥법 상 규정된 제도 중 SW품질인증제도는 상용SW 분야의 공공조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존재하며,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는 SW진흥법이 시행되면 인증보유기업은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우대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허위로 SW품질인증과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표시하려는 유인동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공적 기관에서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 업무처리 방식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증명하는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2-2〉 허위표시 처벌규정 참조례

법률명	조문 내용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 융합법	제17조(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② 제1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광고법, 특허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은 모두 일종의 허위표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처벌의 정도 차이가 있다. 표시광고법은 일반 소비자들을 거짓광고로 속인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또 기술적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부여되는 특허라는 제도의 특성상 특허등록 또는 특허출원의 허위표시는 일반 소비자 외에 특허권을 매수하거나 실시권을 얻으려는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특허가 가지는 공신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처벌하는 것이다. 한편,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이하 ‘ICT융합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앞선 두 법과 달리 벌금형만 있고, 그 상한도 500만원으로 특허법의 3,000만원보다 적은 편이다.

한편, SW품질인증은 2000년 7월 전부개정된 SW산업진흥법 시행 당시부터 실시된 제도인데, 일부 제품에만 SW품질인증을 받고 전체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광고나 보고를 하는 경우가 2000년대 중반에 보고되기도 했으나⁹⁾ 최근에는 언론에 알려진 사례가 없다. 그리고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은 2007년말 경부터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허위광고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두 인증제도는 그간 처벌조항 없이도 큰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두 인증제도는 주로 공공부문 SW사업 추진 시 활용되었는데 서류의 진위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발각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입찰제한을 하는 공공조달의 특성 상 허위표시를 하기 어렵고,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도 일부 기관에 한정될 것이므로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표시광고법이나 특허법처럼 2~3년의 징역형과 3,000만원 ~ 1억 5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기 보다는 정보통신융합법과 같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허위표시와 피해사례가 늘어나면 처벌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박선숙의원의 ‘SW개발보안 진흥’ 관련 일부개정법률안(2019. 6. 12.)

9) 디지털타임스, 2017년 5월 16일자 기사, “GS인증 사후관리강화”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051602010860600004

한편, 2019년 6월 12일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20936)은 최근 증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해킹 등 침해행위의 대다수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안 및 침입차단 프로그램으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인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3〉 SW개발보안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신설> 7. ~ 13.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한다. 7. ~ 1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기술 연구 3.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중소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사업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SW개발보안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SW진흥법에 새로 포함된 SW안전은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SW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SW개발보안은 불법적이거나 고의적인 외부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SW개발과정에서 개발자의 실수, 논리적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보안약점들을 최소화하여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SW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활동이므로 분명히 구별된다.

또한 공공부문은 전자정부법의 하위법령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SW개발보안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부문에는 관련 의무 규정이 없어 SW개발보안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SW개발보안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SW개발보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제출안과 쉽게 합쳐질 수 있고 국가의 SW역량 강화라는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통합되어 통과되었다.

2. SW진흥법 주요 변경 내용

(1) 전체 조문구성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을 국회제출안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제출안과 비교하여 변경된 SW진흥법의 주요 조문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표 2-4〉 국회제출안과 SW진흥법의 수정조문 대비표

국회제출안(7장, 9절, 73개 조문)	SW진흥법(7장, 9절, 78개 조문)
제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장 소프트웨어의 진흥시책	제2장 소프트웨어의 진흥시책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원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의 지원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의 활성화)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의 활성화)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2절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

제3절 인력양성과 기술진흥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박선숙 의원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관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4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진흥)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제1절 공정계약의 원칙
제37조(공정계약의 원칙)
제39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제45조(적정 대가 지급 등)
제49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50조(하도급 제한 등)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제53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제1절 공정계약의 원칙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제4절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6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7장 보칙
제71조(업무의 위탁)
제72조(청문)
제73조(출연금 환수)
<SW진흥법 신 설>
<SW진흥법 신 설>
<SW진흥법 신 설>
<SW진흥법 신 설>

제7장 보칙
제72조(업무의 위탁)
제73조(청문)
제74조(출연금 환수)
제7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7조(벌칙)
제78조(양벌규정)

* 출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자료를 보완함

(2)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SW융합 및 SW교육까지의 주요 변경내용

상임위 검토의견서를 비롯하여 국회심의과정의 변경내용을 조문대비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5〉 정의조항 변경내용

국회제출안	SW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생략)	1. (왼쪽과 같음)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생략)	2. (왼쪽과 같음)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3. (왼쪽과 같음)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4. (왼쪽과 같음)
5. "소프트웨어융합"이란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6. "소프트웨어교육"이란	6. "소프트웨어융합"이란
<신 설>	7.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변경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8. "소프트웨어안전"이란
8. "소프트웨어안전"이란	9. "소프트웨어교육"이란
9. "소프트웨어기술자"란	10. "소프트웨어기술자"란
10. "상용(商用)소프트웨어"란	11. "상용(商用)소프트웨어"란
11. "도급"이란	12. "도급"이란
12. "하도급"이란	13. "하도급"이란
13. "수급인"이란	14. "수급인"이란
14. "하수급인"이란	15. "하수급인"이란

〈표 2-6〉 수정조문 일람표(제4장까지)

국회제출안	SW진흥법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정한다.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정보통신융합법으로부터 이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정보 분석·제공 및 공유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구성)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구성 등)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

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인력의 창업 촉진 2. 소프트웨어융합 기반의 창업 활성화	1. 소프트웨어 인력의 우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소프트웨어 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4.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프트웨어 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3.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신 설> SW개발보안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기술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9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제5장 SW사업의 선진화 이후의 주요 변경내용

상임위 검토의견서를 비롯하여 국회심의과정의 변경내용을 조문대비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7〉 수정조문 일람표(제5장)

국회제출안	SW진흥법
제37조(공정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39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투입인원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47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제50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또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또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표 2-8> 수정조문 일람표(제7장)

국회제출안	SW진흥법
제7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해제 4.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1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22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제7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1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22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7.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제73조(출연금 환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4조(출연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 지원	1.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 지원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환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7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기관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6.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7. 제5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평가시험기관 8.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9. 제7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금 환수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신 설>	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77조(벌칙) ① 제7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제3항과 제21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78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SW진흥법 하위법령 기초연구

1. SW진흥법 하위법령 개관

SW진흥법의 하위법령은 일차적으로 SW진흥법에서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그리고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다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까지 포함하면서 전체 법령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SW진흥법은 현행 SW산업진흥법의 전부개정법률이기 는 하나, 현행 SW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대부분은 일부 문구수정이나 고시의 통폐합 등을 거쳐 내용 측면에서는 거의 대부분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SW진흥법이 현행 SW산업진흥법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부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후 살펴보겠지만 2017년 말 발표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중 SW진흥법에 포함된 사항들 중 일부는 현행 SW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에 이미 반영되기도 하였다.

<표 2-9> 현행 SW산업진흥법 행정규칙

번호	분류	근거	명칭
1	훈령	법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¹⁰⁾
2	예규		공개SW(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¹¹⁾
3	고시	법률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4	고시	법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5	고시	법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6	고시	법률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7	고시	법률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8	고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9	고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10	고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11	고시	시행령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12	고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13	고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14	고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15	고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16	고시	법률, 시행령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7	고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18	고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19	고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래 표는 SW진흥법 통과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주요 하위법령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보다시피 모두 대통령령과 고시로 위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에 직접 위임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SW진흥법 제8조의 SW정책 연구소 운영사업은 현행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29조를 이관해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다음 부분에서는 제9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부터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과 참조입법례를 정리하였다.

<표 2-10> SW진흥법 하위법령 중 주요 신규조문

순 서	법률 조문		위임사항	
			구분	세부내용
0	제8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 담기관 등	대통령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이 고시는 특이하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분석과가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훈령인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3조 및 제24조의2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체계도 내에 포함되어 있다.

11) 이 예규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지식경제부 때인 2012년 6월 13일 한차례 개정되었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예규는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없이도 발령될 수 있다.

http://www.motie.go.kr/m/motie/ms/hy/sop/bbs/bbsView.do?bbs_seq_n=60475&bbs_cd_n=29

순 서	법률 조문		위임사항	
			구분	세부내용
1	제9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대통령령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요건
			대통령령	지역산업진흥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2	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 인증	대통령령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SW기업 을 우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등의 범위
3	제23조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의 설치·운영	대통령령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제24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대통령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에 관한 자료 요청사항
5	제26조	연구활동 지원	대통령령	연구활동 지원 연구기관 범위
			대통령령	지원대상자의 선정, 협약체결, 지원, 결과의 보 고·평가 사항
6	제29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진 흥	대통령령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제30조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고시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7	제31조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 흥 등	대통령령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범위
8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	대통령령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등
9	제40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 업	대통령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및 추진방 식
10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통령령	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SW사업 종류
			대통령령	재평가 배제 사유
11	제46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대통령령	사전협의 대상 요건
12	제47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사업참여지원	고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3	제48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식
			고시	SW사업 수행장소의 요건을 포함하는 소프트웨 어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4	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대통령령	SW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의 범위
			부령	SW사업자의 인력·실적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4	제59조	소프트웨어산출물의 활용 보장	고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대상 및 절차

순 서	법률 조문		위임사항	
			구분	세부내용
15	제72조	업무의 위탁	대통령령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범위
16	제74조	출연금 환수	대통령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2. 신규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과 참조입법례

(1)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 대통령령

이 조문은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역 ICT 산업 기반 조성 사업 명목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지역 SW진흥사업의 법적 근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표 2-11〉 지역 ICT산업기반 조성사업 개요

분류	항목	내용
사업 개요	현황	지역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SW융합 수요 밀집 집적지에 SW융합클러스터 구축(7개 지역)
	방향	지역 내 특화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ICT·SW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기반 사업화, 인력·일자리, 글로벌화 등 체계적 지원 가능 생태계 구축
사업 내용	SW융합클러스터 2.0	지역 핵심산업(기계, 뷰티 등)과 DNA를 접목, 플랫폼 비즈니스 中心의 생태계로 개편, SW융합클러스터 확대(신규, '19~) 사업명 : SW융합클러스터 2.0(특화산업 강화, 플랫폼 사업화)
	지역균형발전 SOS-Lab	지역 현안 해결에 주민참여·데이터분석·솔루션 설계, 검증, 확산 등 전주기 프로세스 적용 가능한 SW플랫폼 제공(신규, '19~) 사업명 : 지역SW산업진흥지원(세종), 지역SW산업진흥지원(제주), 지역SW산업진흥지원(지역지원), 지역균형발전SW·ICT융합기술개발
	Industry4.0+X 대형프로젝트	농생명, 물류, 바이오 등(지역산업)에 ICT·SW융합을 접목, 글로벌 기술·시장 선점이 가능토록 경쟁력 제고(강화, '19~)
		사업명 : ICT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R&D)

*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 중 특히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ICT 전문진흥기관에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18개 지역 SW융합센터¹²⁾를 대상으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

12) 18개 지역SW융합센터는 고양, 인천, 안산, 안양, 용인, 춘천, 강릉, 충북, 충남, 대전, 전주, 광주, 전남, 대구, 포항, 경남, 부산, 울산의 SW진흥기관을 말한다.

통신부는 기존의 제한경쟁 사업공고 -> 심사 -> 선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산업진흥기관 중에 선택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에 설치·운영 하던 SW 또는 ICT 진흥기관들의 신청을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 국가기관등의 범위

SW진흥법 제21조의 해석상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SP인증’ 이라 한다) 제도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SW기업들로의 확산 정도나 인증획득의 산업적 유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을 감안하여 제4항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SP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삽입되었다. 다만, 우대 여부 자체는 개별 국가기관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의 공공SW사업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국가기관등’ 인데 이 국가기관등의 범위는 현재 조문 순서 상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서 처음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2000년 7월 22일 전부개정된 SW산업진흥법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제1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제1항¹³⁾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품질성능평가시험 이 제13조의2가 신설되면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그런데 대기업참여제한제도로 일컬어지는 제24조의2가 2004년 법률 제 6937호로 처음 시행될 때에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를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현행 제13조의2의 ‘국가기관등’ 과 제24조의2의 ‘국가기관등’ 의 범위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문언 상으로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되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비율과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공공SW사업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보다 좁은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공공단체들이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13) SW산업진흥법 [시행 2000. 7. 22.] [법률 제6198호, 2000. 1. 21., 전부개정] 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國家機關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관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SW진흥법에서는 국가기관등의 용어가 제21조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데, 현행 SW산업진흥법 규정의 ‘공공단체’가 ‘단체’로 바뀐 것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비롯해 각종 공공SW사업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기관등의 범위가 모두 동일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그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현재 적용대상으로 분류되는 단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표 2-12〉 국가기관등 규정 변화

법률	조문	조문명	조항
SW 산업 진흥법	제13조 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¹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의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SW 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4)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존립목적을 부여받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법인(公法人) 또는 자치단체(自治團體)라고도 한다. 공공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인격자라는 점에서 국가기관과 구별된다. 공공

(3)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운영)

SW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를 이관해 온 규정이다. 2013년 8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되기 이전인 6월 경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융합법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제3항에 규정된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의 설립을 위한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¹⁵⁾ 이에 대해 국회 일각¹⁶⁾이나 언론¹⁷⁾에서 비판여론이 제기되었는데, 이후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2018년 8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프랑스의 ‘에콜42’¹⁸⁾를 본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진방안’이 상정되었고 2019년 8월 1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12월 20일 개소하였다.¹⁹⁾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3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그 중 ‘42 SEOUL’이 에콜42와 동일하다. 비학위 2년 과정으로 매년 500명 2023년까지 총 2,500명의 최고 수준의 SW인재를 양성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9년 350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총 1,80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²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으로 법률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W전문

단체는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기관을 통하여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단체의 행위를 자치행정이라 말하고 공공단체를 자치단체라고 부른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 목적이 부여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받은 단체이므로 그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설립은 국가의 의사에 의하여, 해산의 자유는 없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감독을 받는 등 특색을 갖고 있다. 공공단체는 그 조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營造物法人) 등 3종으로 나누어진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2600)

1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3/06/477912/>

1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35446602969640&mediaCodeNo=257>

17) <http://www01.zdnet.co.kr/view/?no=20130715103822>

18) 2013년 3월 프랑스 통신기업 프리(Free)모바일 회장인 자비에 니엘이 사재를 털어 세운 스타트업인 재 육성학교로 등록금이 무상인 것 이외에도 교수·교재·졸업장이 없는 3무(無)학교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는 2015년 2월경부터 매일경제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참고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5/02/108268/>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40940>

19) <https://www.innovationacademy.kr/about>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19~’ 23) 요약”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제출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한국SW종합학교와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다. 해당 대통령령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구성되어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시행령으로 만들 수도 있다.

현재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치한 사례는 한국임업전문학교와 한국수산전문학교가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는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각종 대학 외에 ‘각종학교’를 규정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의 대통령령인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이하 ‘설치령’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있고, 설치령 제2조 제2항에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의 소관예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소프트웨어전문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근거는 SW진흥법이기 때문에 SW진흥법에 속하는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조직 및 정원 등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위임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4)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과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SW기술자 신고제도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어 2019년 말 현재 11년을 경과한 제도이다. 시행 초기부터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SW진흥법에는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표 2-13> SW기술자경력확인제 조문대비표

SW산업진흥법		SW진흥법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① 과

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기록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편, 유사한 조문구조를 가지고 있는 SW사업자신고제도도 제도의 실질에 맞게 SW사업자 실적관리제도로 조문명이 변경되었고,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표 2-14〉 SW사업자 실적관리 조문대비표

SW산업진흥법	SW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5) 제26조(연구활동 지원)

지금까지의 SW연구개발사업은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각 대학교의 사업단이 수행해 왔는데, 신진 박사급 SW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에 개인연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도입되고 늘어나는 추세이며,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는 박사후연구원이 연구기관에 구애 없이 원하는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세종과학 Fellowship(가칭), '21~)를 마련할 예정이다.²¹⁾

입법기술(立法技術) 중 하나인 준용(準用)은 이미 만들어진 다른 법령의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해당 법령의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준용규정이 속한 다른 법령을 함께 보아야 실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령의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으나,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제26조(연구활동 지원)은 교육부의 학술진흥법 제6조와 매우 유사하므로 연구활동 지원 대상자의 선정, 연구활동 사업비의 지원과 협약의 체결 및 결과의 보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 중 개인연구자들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W진흥법 제26조의 취지에 안맞는 내용이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 (대법원 2015. 8. 27. 2015두41371)고 보고 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동일하므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준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²²⁾

(6)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의 진흥)

SW개발보안은 2009년부터 SW개발 단계에서 SW보안약점을 진단하여 제거하는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12. 4.자 보도자료, “「젊은 연구자, 네 꿈을 펼쳐라」, 독립적 연구 보장 등 주요 현안 논의” 참조

22) 준용의 정의와 대법원 판례 등의 내용은 법제처a(2019), “법령 입안·심사기준”, 731면에서 인용함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2011년까지 전자정부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SW 보안약점 진단 시범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성과에 따라 2012년 SW개발보안 제도가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이루어져서²³⁾ 공공부문에서는 꽤 긴 기간 동안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SW개발보안을 민간부문 및 중소 SW기업에도 확산하기 위해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SW개발보안 일부개정법률안에 있던 조문으로 SW개발보안 관련 기술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모두 시행령 등에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 당시부터 예정해 둔 것이므로, SW개발보안활동을 민간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두가지 유형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7)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와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SW안전 규정은 이번 SW진흥법에서 새롭게 삽입되었다. SW가 점점 더 국가와 사회의 전 분야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SW의 내부적인 오류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서 정한 대로 SW안전확보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 전 분야에 빨리 확산시켜야 하므로 고시의 형태로 제정하도록 하였다.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는 SW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행령 제정 시에 사업유형을 추가하는 것 외에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8)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23) 행정안전부(2019),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10면 참조

그동안 SW산업진흥법은 공공SW사업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SW를 개발 및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SW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결국 민간부문의 SW사업에서 공정한 계약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SW진흥법은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조건들 규제하는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각종 법률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신고자를 위하는 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SW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42조(발주기술 지원) 등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제2항은 계약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SW사업은 서비스나 상품의 구매/판매 계약인 경우와 도급계약인 경우로 크게 나뉘는데, 도급계약인 경우에는 기존의 다양한 산업 관련 법률들에서 서면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경우를 참고로 하여 필수사항들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5> 도급계약 서면기재 필수사항 참조 입법례

법률 및 시행령	조문 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 제24조(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②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도급 금액, 수리기간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재수리등의 구체적 내용 2. 문화재수리등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4. 문화재수리등의 중지 또는 계약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그 밖에 해당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8. 해당 문화재수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도급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문화재수리등의 완성 후의 도급금액 지급 시기 11. 계약이행 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하자담보 방법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착수의 시기와 공사완성의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인도를 위한 검사 및 그 시기 14.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5.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7.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9)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민간투자형 SW사업은 국회제출안과 달리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과 추진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이 유형(有形)의 시설

물 위주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대상사업의 요건은 법 제40조 제1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게 필수적이다. 한편, 추진방식 자체는 민간투자법 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민간투자법 제4조 제5호와 제6호는 정형화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 외에 새로운 추진방식을 허용하는 조항이지만, 실제로 제5호 또는 제6호로 추진되는 사업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표 2-16〉 민간투자법 대상사업 요건과 추진방식

항목	조문 내용
대상사업 요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중략)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중략)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이하 생략)
추진방식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

	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민간투자형 SW사업도 민간투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위 민간투자법을 참고로 하여 대상사업의 요건과 추진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고려할 점은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물품으로 분류될텐데, 내용연수(耐用年數)²⁴⁾는 일반적인 ‘시설’의 내구연한보다 상당히 짧다. 예를 들면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데스크톱 컴퓨터의 내용연수는 5년, 컴퓨터 서버,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카드 단말기는 6년, 메인프레임컴퓨터는 7년 정도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업은 5년 기준에 하한 4년, 상한 6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도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통 소유권을 귀속시키되 30년 정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유형(有形)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보다는 정보시스템 등의 소유권의 귀속이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유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0)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그동안 국가기관등에서 추진한 SW사업의 결과물을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민간SW사업자들의 경영을 악화시킨 사례들이 많아서 2015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SW사업들의 추진방식을 변경하거나 중단을 권고하는 형태로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해 왔다. 이 SW사업 영향평가가 국가기관등의 장의 의무로 SW산업진흥법에 포함된 것은 2018년 8월 부터이다.

SW진흥법의 SW사업 영향평가는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충실하게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현행 SW사업 영향평가가 거의 모든 공공SW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민간SW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이 명확한 SW사업은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공공

24) 내용연수란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기간, 즉 자산의 수명을 말하며 유형자산이 사용불능이 되어 폐기할 때까지의 추정연수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3548

SW사업의 이해관계자인 SW사업자의 재평가요청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여 영향평가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행정의 효율성을 같이 꾀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래서 SW진흥법의 SW사업 영향평가에 관한 시행령은 현행 SW산업진흥법의 SW사업 영향평가의 기준이나 평가방법 및 절차는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1항에서 규정한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과 제3항에 언급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재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제1항의 제외사업으로는 상용SW 구매 및 유지보수 사업이나 기능의 추가/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보수사업이 가능할 것이며, 제3항의 재평가 예외사유로는 우선적으로 제2항에서 영향평가 결과의 공시 의무의 예외로 명시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표 2-17〉 SW사업 영향평가 조문대비표

SW산업진흥법	SW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신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이 조문은 공공SW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장관 등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²⁵⁾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전협의 대상인 SW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서 규정한 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두가지이다.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대상사업 요건은 다음 두 요소를 통해 어느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전자정부법 제67조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행정기관등 간의 상호연계나 공동이용에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이 사전협의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연계나 공동이용이 아닌 단독성 공공SW사업들 중 일부를 포함하도록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는 제47조제2항은 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사전협의 시 요구사항 상세화나 적정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요구사항 상세화나 적정사업기간 산정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12)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 - 민간투자형SW사업 고시

제48조는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조문인데, 기존 조문의 해석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아 이번에 이해하기 쉽도록 바뀌었다. 한편 대기업참여제한제도 예외사업들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에 포함된 SW사업과 제40조 민간투자형 SW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민간투자대상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민간투자자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기관등이 예산 등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는 공공SW사업 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제40조 민간투자형 SW사업도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활용되고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며,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적용할 경우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규정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25)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제4호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고시는 두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담고 있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이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도 (1) 구체적인 사업명을 알리는 사실의 통지로서의 고시, (2) 예외를 인정하는 요건을 담은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 둘 다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대기업참여제한제도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가 예외인정요건을 담은 고시로서 공공SW사업 추진주체인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SW사업자에게 규범의 예측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을 담은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가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

(13)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 계약방식과 작업장소

현재 공공SW사업의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SW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은 SW사업의 계약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3호는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라고 기술되어 있다. 실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 구조 상으로는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SW진흥법 제49조제1항에서 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제4호만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8〉 SW사업 계약체결 관련 조문대비표

SW산업진흥법	SW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2(작업장소 등)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유지관리를 제외한다)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공급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병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SW ‘아직도 왜?’ TF」에서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던 관행이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과 맞물리면서 과도한 파견근무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우수개발자들이 SW산업을 계속 이탈한다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발주기관과 수주사업자 간에 작업장소 협의를 실질화하기 위해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SW진흥법 제49

조제3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고, 법안 통과 이전인 2018년 8월 22일 개정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이하 ‘일반감독기준’이라 한다) 제8조의2(작업장소 등)에 먼저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정해야 하는 고시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다.

(14)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SW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SW의 설계서와 소스코드 등 SW산출물인데, 공공 SW사업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SW사업자가 직접 만든 SW산출물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제외된 공공SW사업의 SW산출물은 사업자가 자유로이 활용하도록 제 59조가 도입되었다. 이 또한 2017년 12월 발표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며, 2018년 2월 5일 개정된 일반감독기준에 반출제외사유나 반출 절차에 관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하위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표 2-19〉 SW산출물 활용 관련 조문대비표

일반감독기준	SW진흥법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 ① 공급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 보안업무규정 」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상대자와 추진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 대상 및 반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15) 제72조(업무의 위탁)

요즘은 행정의 수행을 국가가 전담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영역은 국가 이외에 다른 존재들에게 맡기고, 국가는 이들이 적법·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⁶⁾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6조²⁷⁾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한다)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과 함께 민간위탁의 대상, 기관선정, 계약체결 및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04조²⁸⁾에 따라 자체적인 조례와 규칙으로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 입안 및 심사 시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⁹⁾. 이에 맞춰 최근 제정되는 법률들은 국가기관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을 위탁하는 것에 관한 규정들을 별도 조문으로 두고 있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을 활용하여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이나 SW 품질인증 등 여러 업무들을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

26) 정우석(2014),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 공공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구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7)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28)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 법제처a(2019) 442면 참조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업무를 어느 기관에게 위탁할지 여부인데,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식과 대통령령에는 위탁업무와 업무담당기관만을 규정하고 각 업무별 담당기관은 별도 고시로 다시 위임하는 방식이 있다. 두번째 방식은 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고 수시로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보다 유용하다. SW진흥법 업무의 수탁기관들은 SW산업진흥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특정 업무의 수탁기관이 변화될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으므로, 첫번째 방식으로 대통령령이 규정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0〉 업무위탁 관련 시행령 참조입법례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한 사례	업무담당기관을 별도 고시에 위임한 사례
건설폐기물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출력 및 검색·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④ (생략)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6) 제74조(출연금 환수)

출연금 환수에 관한 조문대비표는 19페이지 <표 2-8> 수정조문 일람표(제7장)에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은 출연금 환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텐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출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환수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상임위 검토의견서에서 제시한 <표 2-21> 참조 입법례보다 구체적으로 30일 이내의 반환기일과 현금 환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SW진흥법 제74조의 특징인데, 이는 아래 표의 법령을 본뜬 것으로 보인다.

<표 2-21> 출연금 환수 참조입법례

법령	출연금 환수 내용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 7.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 하여야 한다.
민·군 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훈령)	제141조(참여제한 기간 및 연구개발비 환수 기준) ⑩ 정부출연금 환수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이체 하여야 한다. 다만,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은행 약속어음 등으로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⑪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 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반기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물 환수의 경우 구입가격 기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잔존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유형적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다.
--	--

3. SW진흥법 고시 관련

앞서 주요 신설조문의 하위법령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런데, 22 페이지 <표 2-9> 현행 SW산업진흥법 행정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SW진흥법 하위 고시들은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인 경우가 많으며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현행 고시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통폐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표 2-22> SW산업진흥법 고시 개선의견

분류	명칭	개선의견
현행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존속
현행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통합가능
현행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신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고시	
현행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존속
현행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존속
현행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지정	통합가능
현행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현행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기획·예산편성 단계의 과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내용 포함 - 발주 시 요구사항의 상세 작성·공개에 관한 내용 ³⁰⁾ 포함 - 적정사업기간 산정 관련 내용 포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대상 및 반출 절차에 관한 내용 포함	통합가능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통합가능
현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현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현행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단순 알림용 고시이므로 업무위탁 고시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현행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존속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존속
현행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통합가능
현행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현행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존속
신규	SW안전확보 지침	존속

30) 현재는 예산편성단계와 발주단계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동일하다

제3장 SW사업 표준계약서

제1절 SW사업 표준계약서 관련 중점연구사항

1. SW사업 계약의 개요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ICT융합 개념이 성숙기에 이르면서 SW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다양한 분야의 기존기업들이 자체적인 SW개발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W라는 재화를 생산·공급·소비하는 SW산업 관점에서는 이미 완성된 SW를 일체의 변경없이 공급/구매하는 상용SW 판매 외의 SW사업 계약은 대부분 도급계약이다.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SW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서비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상용SW의 고객 맞춤형 수정/공급(이하 ‘커스터마이징’) 사업과 유지관리사업은 본질적으로 특정 과업의 완성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므로 역시나 도급계약이다. 그 외에도 임베디드SW와 게임SW에서도 SW개발을 위탁하는 도급계약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의 SW사업 계약은 도급계약을 전제로 하며, 단순한 상용SW의 판매 같은 경우를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도급계약은 고용,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 시에 보수의 지급이 이뤄져 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계약형태와 구별된다. 도급계약의 법률적 성질은 낙성(諾成),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이며 주문에 의한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에서 주로 통용되고 있다. 토목공사나 각종 건축, 선박의 건조 등과 같은 분야가 잘 알려져 있지만, 출판, 예술인 출연계약, 연구개발서비스업도 주로 도급계약으로 이뤄진다. 업무의 완성을 위해 인력을 투입한다는 부분에서 도급계약은 파견계약과 외형상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다만, 계약형태에 따라 적용받는 법률, 거래상 지위에 엄연한 차이

가 존재한다.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배종속관계이다. 파견계약은 계약에 따라 발주자에게 인력을 파견하고 파견된 인력은 발주자의 지휘, 명령을 받지만 도급계약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도급인의 지휘, 명령을 받지 않으며,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만을 부여받는다. 최근 지속적으로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의 구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형태는 도급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파견계약 형태로 파업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투입인력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SW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SW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심지어 인사관리까지 하는 관행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계약의 법적 성격, 수발주자의 권리, 의무 명확화를 위하여 이와 같은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수주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당사자 간의 법적 지위가 형식적으로라도 동등하겠지만 계약체결 이후에는 일이 완성되어야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공적 이행과 대금 수령을 위해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만 한다. 물론 현재의 계약관행으로 일정 정도의 선급금(착수금)을 받고 이상적으로는 진척 정도(기성고)에 따라 중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상 지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수급인인 SW사업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도급인이 다소 무리하거나 불공정한 요구를 하더라도 대체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만 맡겨둔다면 SW산업에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만연하게 되어 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는 다른 산업분야에서와 같이 공공SW사업을 중심으로 도급인(발주자)의 소위 ‘갑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발주 관련 제도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2. 기존 SW사업 표준계약서 현황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SW사업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부속서류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거나 기관 별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유사한 별도의 계약부속서류(명칭도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소프트웨어계약일반조건인 경우가 많다)³¹⁾를 만들어서 포함하고 있다. 이 용역계약일반

3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을 두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외에 「소프트웨어계약일반조건」을

조건은 공통적인 일반용역계약조건 외에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부터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를 두고 있어 실질적인 공공 부문 SW사업 표준계약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이 준거법이 되는데,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용역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사업을 위한 별도의 절을 두거나 조문을 두고 있지는 않다.³²⁾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에 근거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민간부문 계약당사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들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SW사업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해서는 IT서비스 중 정보시스템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관리, 상용SW 분야의 상용SW 공급 및 개발/구축, 그리고 유지관리의 4종 계약서가 있다. 일반적인 제조물품에 탑재되는 임베디드SW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범용/특정 2종의 임베디드SW개발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다. 그 밖에 2013년 시행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게임 분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³³⁾가 공동으로 2018년 게임SW와 관련해 도급/하도급 사업을 포함해 5종의 표준계약서들을 보급하고 있다. SW산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6년 클라우드서비스 분야의 2종 계약서와 2018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분야의 4종 계약서를 펴낸 바 있다.(〈표3-1〉 참조)

두고 있다.

32) 이전에는 지방계약법의 하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두었으나, 지금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19년 6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주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적용되는 법률 및 고시 항목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33)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별도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관련 5종 계약서,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는데, 성격상 SW사업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이 연구보고서의 표준계약서 개발에 참조하였다.

34) SW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한 광의의 SW산업과 세부품목 분류체계를 토대로 정보보호서비스를 추가하

〈표 3-1〉 SW사업 관련 기존 표준계약서 현황과 연구범위

분야 ³⁴⁾	표준계약서 명칭	소관부처
패키지SW	1)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 2)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공정거래위원회
IT서비스	1)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임베디드SW	1) 특정 임베디드SW 개발용역 2) 범용 임베디드SW 개발용역(성과보수 추가지급)	산업통상자원부
게임SW	1) 게임(도급)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
	2) 게임(하도급) 계약서	
	3) 게임(퍼블리싱) 계약서	
	4) 게임(중개) 계약서	
	5) 게임(위탁판매) 계약서	
	6) 게임용 소프트웨어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³⁵⁾	공정거래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표준계약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정보보호 서비스	1)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표준계약서	
	3) 보안성지속서비스 표준계약서	
	4) 보안관제서비스 표준계약서	
인터넷SW	표준계약서 없음	없음
SW유통	표준계약서 없음	없음

3. 중점연구사항

이처럼 SW사업 관련 표준계약서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거나 기존 계약서와 차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로 연구범위의 설정 측면에서는 게임SW와 클라우드 서비스와 정보보호 서비스 분야는 표준계약서가 최근인 2018년에 개발되었고 인터넷 서비스 분야도 자체 개발하여 완성한 서비스의 이용 계약이라는 특성으로 SW산업에서 주로 체결되는 도급계약으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가 부각되기 어렵다고 보아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게임SW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보급 중인 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1월 18일자로 공표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으며, 일반적인 SW와 달리 콘텐츠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의 완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 형태로 수행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

였다. 참고로 정보보호서비스는 위 분류체계에서는 패키지SW 내의 정보보호SW 또는 IT서비스 내의 다양한 분야에 분산되어 있다.

35) 2019년 11월 1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게임SW 하도급 표준계약서이다.

라고 보았다. 다만, 이들 분야의 계약서도 참고사례로는 활용하였다.

둘째로 민간 부문의 SW사업에서의 실제 계약관행을 수집·분석하여 발주자와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추구하되, 계약관계에서 ‘을(乙)’의 위치에 있게 되는 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좀 더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로는 SW진흥법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공공SW사업 제도 중 민간 부문의 SW사업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계약관행을 같이 선진화하고자 하였다. 넷째로는 기존의 업종별 SW사업 표준계약서를 사업유형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업종별 SW사업 표준계약서의 용어와 조문들을 공통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래에서는 먼저 기존 표준계약서들을 SW 유관 분야와 기타 산업 분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본 후 SW사업의 계약관행들을 수집·분석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고 있는 패키지SW와 IT서비스 분야의 4종 하도급계약서가 이 보고서에서 개발하는 표준계약서의 모태가 되었으므로 이들 계약서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이후 표준계약서 개발의 주안점을 살펴보고 주요조문들을 공통조항과 각 분야별 계약서 특수조항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제2절 기존 표준계약서 분석

1. SW 유관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1) 임베디드SW

산업 전 분야에서 IT융합이 진전되면서 임베디드SW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내 시장도 2012년 약 17조원 규모에서 향후 5년간 매년 9.1% 이상 성장하여 2017년에 27조원으로 전망되자, 성장이 정체된 국내 주력산업의 임베디드SW 역량 강화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 및 첨단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국내 주력 산업 생태계에서 임베디드SW를 공급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경기 현황과 발주자인 대기업의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발주되는 임베디드SW 용역이 주 수입원인 하청업체여서 정당한 사업 대가를 받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수직적 생태계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고, 임베디드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임베디드SW 개발과제에 일정 부분 기능점수 방식의 ‘임베디드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적용확대를 비롯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확산해야 한다는 전자부품연구원의 연구결과가 2013년에 나왔다.³⁶⁾ 이에 따라 2014년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는 SW 및 전자업종 분야의 표준계약서 분석 등을 통해 특정SW 개발 표준계약서와 범용SW 개발 표준계약서 2종을 개발하였는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3-2〉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 특징

구 분	주요 내용
실무 적용성	- 중소 임베디드SW 전문기업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무 적용성 제고 - 전문분야별 세분화된 내용으로 활용 편의성을 높임 - 수요기업-공급기업간 매출종속 정도가 높은 임베디드SW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표준 조문 강화 제시 - 임베디드SW 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모듈 공급기업의 모듈 공급에 대한 계약 조항을 세분화하여 제시
지식재산권 귀속	- 모듈 등 제품 뿐만 아니라 무형의 기술 및 SW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부분 강조 - 계약의 이행과정에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규정 - 2차적저작물에 대한 귀속 규정 - 모듈 외부 디자인 설계에 대한 개발기여도에 따른 지식재산권 귀속 조문 제시
성과공유형 계약관계	- 수요기업-공급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형 계약관계 제시 - 임베디드SW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SW 개발계약에서의 성과보수 적용 분야 및 성과보수 산출에 대한 조문 제시

* 출처 : 전자부품연구원(2014), “임베디드SW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발”

(2) 게임SW

게임SW 분야 표준계약서는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콘텐츠(DC) 분야에서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마련된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게임SW 표준계약서는 게임 도급, 게임 하도급, 게임 중개, 게임 위탁판매, 게임 퍼블리싱의 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SW개발 사업과 연관된 표준계약서는 게임 도급, 게임 하도급 2종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6) 전자부품연구원(2013), “임베디드SW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표 3-3〉 게임개발 표준계약서 개요

구 분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게임 하도급 표준계약서
대상 계약	사업자가 제작사업자에게 게임제작을 의뢰하는 계약	게임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제작을 제작사업자에게 다시 의뢰하는 계약
주요 내용	제작협의 및 지시, 시용상품 등의 제작, 납품,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검사, 지식재산권의 귀속, 대금 조정, 감액금지, 대금지급, 이행보증금, 하자담보책임,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을 규정함	제작협의 및 지시, 시용상품의 제작, 납품, 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검사, 지식재산권의 귀속, 대금 조정, 감액금지, 대금지급, 이행보증금, 하자담보책임,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을 규정함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법률자문사례집”

(3) 클라우드서비스³⁷⁾

클라우드서비스 표준계약서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 형태로 지난 2016년에 마련하였으며, 법적 근거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클라우드서비스 표준계약서는 B2B, B2C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드서비스 표준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야기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 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추진하였다. 또한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공급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 밖에 클라우드 공급사업자는 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는 최종이용자의 불법 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

(4) 정보보호서비스³⁸⁾

37) 미래창조과학부, 2016.12.05.자 보도자료 “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마련”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근거로 정보보호서비스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용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을 위해 마련하였다.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등 정보보호를 위한 특수한 과업이 명시되어야하나, 그간 공공부문에서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계약 내용에 정보보호서비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서비스 계약의 과업 범위를 명확히함으로써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정보보호서비스 표준계약서는 총 4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정보보호서비스를 정보보안컨설팅서비스, 보안성지속서비스, 보안관제서비스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서비스별 계약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과업의 범위 및 세부 수행 내용,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이하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고,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세부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계약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2. 타 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분석

(1) 연구개발서비스업³⁹⁾

세계적으로 서비스업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서비스업의 양적·질적 성장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내적 혁신역량이 크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고급 이공계 인력의 고용창출을 견인하는 핵심적 지식집약 서비스업으로 평가되지만, 수년간의 정책적 육성 의지에도 성장이 미흡하다. 연구개발서비스업 표준계약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03.02.자 보도자료 “정보보호서비스 계약, 표준계약서 마련”

39)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1),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표 3-4〉 연구개발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인력관리	- 상호합의하에 연구인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계약 당시 발주자가 지정한 인력은 교체 불가 명시 - 중간성과 불만족 시 성과의 부진이 연구인력에 기인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 한해 발주자 인력교체 요구 가능
품질관리	- 연구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개발 지연에 대한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수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연구성과 미흡을 제외하고 추가 개발비용 지급사항 명시 - 정당하게 수행된 결과가 발주자의 의도와 다른 경우에도 계약상 의무이행 거절이나 기타 이의 제기 금지 규정
대금지급	- 수발주자가 합의한 경우 선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착수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정 명시
지식재산권	연구개발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명시

*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1),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2) 방송 분야⁴⁰⁾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는 방송산업·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방송영상 제작·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방송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스태프·방송작가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SW사업과 유사한 용역계약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5〉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지급보증	프로그램 원고료, 출연료 등의 원활한 집행 담보를 위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요구사항 명시
지식재산권	- 저작권법을 준용하여 계약당사자의 제작 기여도에 따라 지식재산권 인정 - 기여도에 따른 권리 배분, 수익배분 등에 대한 별지 제공
부당반품 금지	수주자(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 반품 방지를 위한 조항 명시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당사자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 해지·해지 조건 명시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9),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3) 이러닝 산업⁴¹⁾

40) 문화체육관광부(2019),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대표적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인 이러닝 산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시장 확대와 더불어 이러닝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는 이러닝 콘텐츠개발자와 발주기관(서비스사업자)간의 계약은 표준계약서 없이 발주기관마다 각기 상이하게 콘텐츠개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의 경영난 가중, 이러닝 제품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닝 산업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었다. 이 중 SW사업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지닌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와 발주자(서비스사업자) 간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6〉 이러닝 콘텐츠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구 분	관행	개선 내용
이러닝콘텐츠 개발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여부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를 발주기관(서비스업체)이 소유	계약에 의해 콘텐츠 개발업체가 소유
콘텐츠개발에 활용된 저작물에 대한 비용 부담	콘텐츠 개발업체가 부담	개발비용에 포함토록 하며 발주기관이 부담
설계, 사양, 기간 및 물량 등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귀속	콘텐츠 개발업체가 부담	추가비용을 산정하여 발주기관이 부담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3. 6. 21. 자 보도자료, “이러닝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 마련”

(4) 이야기 산업

콘텐츠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이야기’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창작에서 소비까지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이야기’에 대한 개별법적 보호방안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야기’에 대한 무단사용이 발생하더라도 ‘이야기’ 창작자가 권리구제를 받기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한 이야기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국가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이를 위해 이야기 산업 표준계약서가 연구 및 개발되었다.

이야기 산업 표준계약서는 이야기 유통 플랫폼⁴²⁾을 통한 이야기 거래와 관련

41) 산업통상자원부, 2013.06.21.자 보도자료 “이러닝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 마련”

계약의 형태를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이야기의 집필 수준, 작품화 희망분야에 따라 표준계약서 사용 분야를 구분하였다. 이 중 이야기 신규 제작에 활용되는 이야기 제작형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³⁾

〈표 3-7〉 이야기 제작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이야기의 수정	▪ 이용자는 제작이 완료된 이야기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저작물화함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창작자의 창작의사를 존중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창작자는 이용자의 수정요구가 이야기의 본질에 반하거나 창작자의 의도에 반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이야기의 내용을 수정함 ▪ 그러나 이용자는 이야기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증감할 수 없도록 함
지식재산권	▪ 창작자가 이야기 제작을 완료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이용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이용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역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증한 후, 이야기 제작을 완료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할 수 있음 ▪ 이용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함에 있어 유상인 경우에 창작자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등의 제공시기, 이용기간, 대금 및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함
부당한 대금에 대한 조정	▪ 이용자는 이야기 제작의 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함 ▪ 일정한 부당대금 사유를 명시함 ▪ 부당하게 낮은 대금으로 책정된 경우 대금의 합리적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함과 더불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해제권까지 부여하여 그 사법적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약정해제사유 추가)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제3절 SW사업 계약관행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W사업은 거래상 지위의 격차가 존재하는 수발주자의 계약 체결을 통해 실시되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로 인한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 조건의 강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만연해있다. SW사업 계약관행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42) www.storyum.kr

43)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1. 계약내용과 이행과정 관련

(1) 불명확한 과업범위

SW개발 사업은 무형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단계에서 과업내용 및 범위가 일부 불명확한데 계약이행 중에 분석설계 단계를 거치며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SW사업 진행 중에 수발주자 모두가 협력하여 ‘일’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SW공학 방법론에 입각한 각 개발 단계의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가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업무나 비용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수주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식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는 사례가 만연해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계약서 뿐만 아니라 계약범위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제안요청서 등의 관련 서류에 존재하는 불명확한 과업범위의 사례를 다수 수집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표 3-8> 불명확한 과업범위 조항 사례

계약 내용 예시	
현 단계에서 규모 및 범위 산정이 어려워 개발규모 변동 가능성이 큼	
제31조(기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제안서, 보완자료 등 본 계약에서 수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계약 이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계약 이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1)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의 유권해석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질의·협의 등)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당사의 해석에 따름
사. 통합테스트 환경구축 기본 구성요건 1)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설치 장소는 여러번 변경이 가능하며
제31조(기타)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제안서, 보완자료 등 본 계약에서 수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계약 이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기술 및 교육지원) ① “을”은 사업목적물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에 그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시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일체의 솔루션에 도입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가 수정, 추가, 보완, 교체 등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사항을 수용
2. 구축 범위 - 상세 구축범위는 별첨 #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함 - 구축업무 진행 중 개발변경(CSR)이 필요할 경우 개발변경(CSR)에 따른 업무도 본 계약상의 구축업무에 포함됨. 단, 본 계약 제 3 조의 구축업무 완료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중대한 변경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함.
○ 기 타 - “갑”의 업무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구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변경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추가 개발
제6조 일정준수 등 3. “고객”은 “을”의 시스템 구축 수행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하여 수시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과업변경(물품변경 포함)의 비용부담

SW사업계약은 설계산출물을 확정하는 과업구체화 절차를 통해 이후 시행될

구현단계에서의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업변경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발주자는 상세설계 단계에서, 수주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산출물이 확정된다고 인식하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과업구체화 절차에서 발주자와 수주자 양자가 합리적으로 과업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과업범위의 변경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전적으로 개발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개발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앞서 언급한 불명확한 과업범위 조항은 결국 실질적인 과업변경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발주자 응답하여야 하는 비용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9〉 과업변경비용 수주자 부담 조항 사례

계약 내용 예시
제5조(계약의 변경) “갑” 또는 “을”이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별도의 서면합의로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8조 (제품의 변경) ① 계약 물품 중 일부를 신형모델 또는 대체모델로 교체할 것을 “공급자”로부터 추천 받아 “구매자”가 판단하기에 유리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 ①항의 경우 “공급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일정준수 등 3. “고객”은 “ ”의 시스템 구축 수행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하여 수시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 ”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25 조 (지원사항)

-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연동되는 카드사의 장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장치와 본 물품이 연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완료후 카드사의 업무상 물품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철수 및 이전설치에 따른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카드사에 대가를 요청하면 계약상대자와 카드사는 상호 협의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S/W의 재설치 필요가 재해 등 카드사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카드사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제1.27조 계약금액

1.27.1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확정가격 일괄 도급 금액이며, 도급인과 계약자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물가변동 등 여하한 경우에도 계약금액 변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24 조 (지원사항)

-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연동되는 카드사의 장치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장치와 본 물품이 연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완료후 카드사의 업무상 물품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철수 및 이전설치에 따른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S/W의 재설치 필요가 재해 등 카드사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카드사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S/W의 재설치 필요가 재해 등 카드사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카드사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 ⑤ 단, ②항, ③항, ④항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카드사에 요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인정할 경우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5) 물품공급 계약후 추가공사(설계변경)에 증감할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pm 3\%$ 이내 증감일 때에는 계약금액 변경없이 당초 계약금액 이내에서 “공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 . 내역에 없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된 부분들도 모두 포함한다.

6) 본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내용 및 장비(H/W 및 S/W)가 제안요청서 상에 누락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장비 설치 장소가 변경될 경우 자기부담으로 장비 이전에 따른 제반 활동을 수행
☐ 본 사업의 목적 및 기능 구현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가 H/W, S/W (라이선스 포함) 증설에 대한 비용 부담
-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후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조합에서 아키텍처 조기검증을 위해 H/W나 S/W의 재구성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도출된 추가적인 H/W, S/W 도입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수준은 고객사 과 협의 가능(단, 신규 서비스 요건, 변경에 따른 추가 용량은 제외함) ○ 성능 문제 등으로 자원 용량 추가 시, 필요한 S/W 라이선스도 함께 제공
○ 우선협상대상업체는 '입찰대상품목'의 교체, 추가, 제외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종 시스템 아키텍처의 완전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입찰절차의 하자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품 하자, 납품지연 등 납품업체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3) 계약해지

SW개발계약에서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발주자는 개발사의 귀책사유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계약을 해지(대상 제품의 구매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할 수 있는 반면 개발사는 과도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권이 제한되거나, 개발사의 책임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개발사에게 과도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표 3-10〉 불공정한 계약해지 조항 사례

계약 내용 예시

제 17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마. 계약 제품의 구입이 관계기관의 승인 조건일 경우 이를 득하지 못할 때

바.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한 본 계약 제품 구입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제 28 조 (특약사항)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카드사는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간 합병을 비롯하여 기타 중대한 사유로 카드사의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중지 및 물품 설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납품중지 및 물품 설치중지 통보를 받는 즉시 물품의 납품 및 설치를 중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② 카드사는 제1항과 같이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카드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유발생 전 완납물품에 대하여는 제7조에 의거 검사완료 후 대가를 지급한다.

제 16 조(계약의 해제, 해지)

- ③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회사"는 위약 벌로 그때까지 지급된 선금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카드사"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시점까지 소요된 "회사"의 비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회사"의 소요 비용의 최대 금액은 본 계약금액까지로 하며, 소요 비용은 "회사"가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투입한 근로자의 용역 비용에 대하여 "카드사"와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산정한다.

(4) 투입인력 관리

용역범위를 명시하여 SW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입인력 관리를 계약내용에 포함하는 등 인력관리 중심의 사업관리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 발주자가 사업자 소속 기술인력의 작업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파견근무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거나, 사업자로부터 업무의 진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 외에 업무수행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과도한 인력관리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과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입인력을 파악하여 계획대비 미투입 인력의 인건비를 감액정산하는 등 도급계약의 본질에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

<표 3-11> 투입인력 관리조항 사례

계약 내용 예시
4.11.3 인력 관련사항 ○ PM, PL등 당사가 지정하는 프로젝트 주요 인력에 대해서는 교체가 불가하며 교체 시 별도로 협의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서 상의 투입 인력은 본 프로젝트 수행 중 당사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음 ○ 투입인력(예정인력 포함)에 대해 당사는 사전 인터뷰 등의 인력 역량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담당 업무 수행에 해당 인력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제 13 조 (대가의 지급)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 대금 청구시 인력 투입 계획에 의거 본 계약에 투입해야 할 인력의 등급별 총 M/M를 해당 업무팀의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카드사에 제출하고, 카드사는 투입인력의 등급별 M/M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제6조에 의한 인력변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인원의 교체 및 증가) ① 프로젝트 수행 중 특정기술자에 대한 카드사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으나 카드사의 요구를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기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카드사의 사전동의 없이 임의로 인력을 철수, 교체, 추가 투입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투입인력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카드사와 상호 합의하여 인원을 교체하거나 추가 투입 할 수 있다. ④ 인력의 교체 및 추가투입은 “투입인력 변경 요청서”로 같음하며, 이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 수행에 필요하고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선임·관리·감독상의 책임을 지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당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당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검수와 지체상금

(1) 검수(검사와 인수)

개발을 완료해 납품하면 발주자의 검사를 통해 사업이 종료되는 바, 검수는 수주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잔금 지급 청구 등 권리가 발생하는 절차이다. 뿐만 아니라 검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상

금 부과 또는 기타 계약 이행 상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주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를 통과한 후 그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인수는 매우 중요한 과업절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검수가 끝나 계약목적물의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시스템이나 장비에 대한 관리 내지 지배권이 발주자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수 전 모든 손해에 대해 그 발생 원인이나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개발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실제 계약서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표 3-12> 불공정한 검수 조항 사례

계약 내용 예시
제 26 조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품 또는 설치 완료한 후 카드사의 검수완료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고(화재, 도난, 파손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25 조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카드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설치 완료하고 카드사의 담당자로부터 설치확인을 받았다면, 해당물품 설치 공간의 화재, 물품의 도난, 물품의 물리적 파손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 있다, 단, 설치완료 후 무상보수기간 종료시까지 물품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기로 한다
6. 기성 및 검수 방안 6.2. • Sign-off 갑·호사승인 및 Sign-off 수행, 산출물 V1.0 등록, V1.0 기성 방안 - 기성 시점 : 산출물 목록에 명시된 산출물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갑·호사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다 - 검사 기준 : 검사 기준은 산출물 검사 절차에 따라 갑·호사 sign-off 가 완료된 산출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19조[검사]

- ①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 ② "원사업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 부득이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검사 기준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원발주자"가 요구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검사]

- ①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과업의 수행을 완료(과업내역서 6.1 검사 절차의 "갑_자회사 1차 Review의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 ② 양 당사자는 검사 기간, 검사 조건 등 검사와 관련한 제반 조건에 대해 매 대금 청구일 기준 15영업일 이전까지 "원발주자"의 검사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제반 조건을 협의하기로 하되 협의되지 않은 경우 과업내역서에 정의된 검사와 관련된 제반 조건에 따르고 과업내역서에 정의되지 않은 검사 기간에 대해서는 양사의 협의로 결정하기로 한다. 단, 검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기성 시점 : 프로젝트 수행 중갑자회사의 요청에 의해 고객사(갑)와갑자회사간 협의를 거쳐 기성 시점을 정한다.
- 검수 기준 : 검수 기준은 산출물 검수 절차에 따라 고객사(갑) sign-off 가 완료된 산출물을 대상으로 한다.
- 기성 비율 : 각 기성 시점에 고객사와갑자회사간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성 비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2) 지체상금

발주자는 계약기간 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검사결과 불합격이어서 계약이행이 지체된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지체대상금액에 지체일수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지체대상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완성되어 이미 인수한 것을 공제하여 지체상금 부과 대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이때 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는 부분도 공제할 수 있음), 정산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공공SW사업의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령⁴⁴⁾상 물품의 제조/구매 및 물품과 용역의 일괄입찰에 해당되므로 1천분의 0.75가 적용되는데 민간부문의 SW사업계약의 경우에는 이보다 4배 많은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체상금액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계약금액 대비 과도한 지체상금액이 부과될 우려가 있는 사례(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것도 가능)도 존재하였다.

<표 3-13> 지체상금 산정 관련 계약서 사례

계약 내용 예시	
제 조 (기한연장 및 지체상금) 1. “ ”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 ”는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2.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함)을 “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 ”가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29조 (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대금의 3/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지체상금총액은 하도급대금의 30/1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천분의 1.5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제29조 (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3/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지체상금

“ ”가 제 조에서 정한 산출률과 서비스 및 공급물품의 제공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은 “ ”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지체상금은 지체 매 1일당 총 계약금액(H/W, S/W 를 제외한 금액)의 2.5/1000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일로부터 프로젝트

제 조(지체상금) ① “ ”는 제4조 제1항의 계약기간 내에 본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본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 ”의 책임으로 본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제 조 제 항의 계약기간 내에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 검사에 소요된 기간. 다만, “ ”의 제 조 제 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시정조치 요구를 한날부터(계약기간 내 시정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4. 기타 “ ”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지 체 상 금 률	매 1일당 계약금액의 0.25%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 및 붙임의 문서에 의하여 상기의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기명날인(전자서명 포함)한 후 각각 1부씩 보관(전자적 보관 포함)한다.	

제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의 총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 ”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 ”은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 또는 기납 부분(이하 “기성부분”이라 한다)을 검사를 거쳐 인수(완료되어 대금을 지급한 경우 및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 조[지체상금]

- ① 는 부속계약에서 정하여진 기한을 위반하거나 부속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사용이 지체될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협력사의 이행지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사유에 기인할 경우 는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의 책임으로 이행이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협력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③ 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에게 지급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다.

3. 지식재산권과 하자담보

(1) 지식재산권 귀속

SW개발 계약에서 산출물(시스템설계도·사양서, 조작설명서·메뉴얼 등,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SW개발 성과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관행적으로 발주사가 전적으로 소유해 왔던 문제는 공공SW사업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공공SW사업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며,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SW사업에서는 여전히 지식재산권을 발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표 3-14〉 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사례

계약 내용 예시

제 조 (계약목적물의 권리 귀속)

- ①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다음 각 호의 산출물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제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포함) 기타 모든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은 수요사에게 귀속된다.
1. 개발 완료된 응용프로그램 및 소스코드
 2. 수요사에게 제출한 각종 보고서
 3. 작업명세서에 정의된 계약목적물 등
- ② 본 계약체결 이전에 양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양당사자가 계속하여 소유하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공급사"는 제1항의 산출물을 "수요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④ "공급사"는 본 조에 따른 "수요사"의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수요사"에게 발생하는 소송비용 기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산출물 소유권)

- ① 본 용역수행 중 발생하거나 또는 용역수행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1의 산출물에 대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또는 특허권은 모두 카드사에 귀속된다.
1. 개발 완료된 응용프로그램 (단, 본 계약 이전에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카드사가 양도 불가한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카드사에 제출한 각종 보고서 및 Documents
 3. 카드사가 수시로 요청한 각종 자료
 4. 카드사가 지급한 용역비로 수집된 기타자료 등

- 사업수행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은 당사로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소유권 기타 권리의 귀속]

- ① 계약목적물, 계약목적물 발명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중간 발명 등 일체의 산출물 및 발명 과정에서의 유형적 발생품, 샘플, 보고서, 실험 데이터 등 일체의 학술적, 기술적 성과(이하 "산출물"이라 한다)의 소유권, 특허발명, 실용신안, 의장 등의 지적재산권, 노하우(Know-How) 등 일체의 권리(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는 협력사의 발명 즉시 에 귀속된다.
- ② 는 제1항의 산출물에 대한 사용, 양도 권리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취득한다.
- ③ 는 또는 협력사가 산출물을 응용하거나 개발하여 새로운 발명을 할 경우, 새로운 발명에 대한 사용, 양도 권리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취득한다.
- ④ 협력사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가 취득하는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전절차를 즉시 이행하기로 한다.
- ⑤ 는 기본계약 등에 의하여 협력사가 제출하는 각종 자료 및 이로부터 습득한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⑥ 협력사는 산출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 ⑦ 본 조의 규정은 기본계약 등이 해지 또는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지적재산권 등)

- ① 본 용역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용역수행 결과 얻어진 결과물로서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 보고서, 소스코드 포함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특허권, 등록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 2 차적 저작물을 포함하고 등록유무를 불문한다)은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의 단독소유로 한다.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결과물'을 수정, 변경 및 개작하거나 역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자료 및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결과물' 및 '결과물'의 사용이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제 3 자로부터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또는 민형사상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를 면책하여야 한다.
- ③ 전 항과 관련하여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가 제 3 자에게 배상을 하거나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의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보유하게 될 '결과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의 '결과물' 사용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에게 "결과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며, "계약상대자"가 처분권한이 없으나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가 "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가 "결과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확보하여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알게 될 유무형의 정보, 자료 및 유의 소유권은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본 용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계약상대자"는 본 항을 위반함으로써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⑥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물'은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갑계열사" 또는 원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하자담보 책임범위

다수의 SW개발계약에서는 여전히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의 유지보수가 무분별하게 병용되어 사용되거나, 무상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별도의 유상 유지관리계약 체결 전까지 개발사에게 계속 관리 책임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에서 장애 복구가 지연될 때 시간 당 1천분의 3이라는 과도한 지연배상금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3-15〉 부당한 하자담보 책임범위 사례

계약 내용 예시
제 13 조 (하자보증) 1. 본 계약 제품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제4조 제1항의 계약기간 종료일 후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물품명세서에 기재된 무상유지보수 기간으로 한다.
제 24 조 (책임사항)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수기간 종료 후 별도로 물품의 보수정비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또는 기계적 결함 등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카드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무상하자보증) ①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 을 ” 는 “시스템” 이 제28조에 의하여 제공한 문서상에 기재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무상하자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하자의 원인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한다. 1. 화재,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고 등에 의한 하자 2. “ 을 ” 의 보수요원이외의 사람이 시스템의 보수, 개조, 기구변동 또는 이동을 행한 결과 생긴 고장 3. “ 을 ” 가 인정하지 않는 환경조건과 설비에 의하여 발생한 고장, 기타 “ 을 ” 의 책임이 미치지 않는 원인으로 인한 고장 4. 기타 “권소시엄” 이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사용으로 발생한 고장
장애 복구 지연시 해당 장애 시스템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 시간당 해당 시스템 계약금액의 3/1000을 지연배상금으로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장애 신고 접수후 3~4시간내 정상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절 표준계약서 개발 고려사항

1. 표준계약서 체계와 원칙

(1) 표준계약서 체계

지금까지 SW사업은 47페이지 <표 3-1> SW사업 관련 기존 표준계약서 현황과 연구범위에서 보듯이 주로 업종별, 사업유형(개발, 유지관리 등)별로 구성되었다.

이 방식은 새로운 업종과 유형이 등장하면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며, SW사업의 특성 상 공통적인 조문들이 반복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SW사업을 계약목적물이 아닌 과업의 형태에 제작계약, 서비스계약, 유통계약의 3가지로 구분하는 새로운 SW사업 표준계약서 구성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3-16> SW 관련 제작, 서비스, 유통 계약 분류

신규분류	사례
SW제작계약	- 상용SW 개발 하도급 계약서 - 정보시스템 구축용 SW개발 하도급 계약서 - 임베디드SW 개발용역 계약서 - 특정SW 및 범용SW - 게임 및 콘텐츠(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
SW서비스계약	- 클라우드서비스 계약(B2B용, B2C용)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도급 계약서 - 상용SW 유지보수 하도급계약서 - 정보보호서비스계약(통합, 정보보안컨설팅, 보안성지속, 보안관제)
SW유통계약	- 상용SW 공급계약 - 게임 및 콘텐츠(충개, 위탁판매, 퍼블리싱)

<표 3-17> SW사업 표준계약서 구성 방식 비교

구분	기존 방식	신규 방식
장점	-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현장 적용성 높음 - 이미 정립된 SW사업의 종류 및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쉬움	표준계약서 구성 및 종류를 단순화하여 직관적인 체계 도입 가능
단점	다양한 SW유형, 종류별 계약서 구성으로 인해 계약서 종류 증가	- SW의 종류, 유형별 특징 반영 어려움 - 실제 SW사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익숙하지 않음

SW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새로운 구성방식을 기존 방식과 비교해 설명하고, 선호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SW기업 담당자들은 SW사업 현장의 활용성을 중시하여 기존 방식을 선호하였다.

〈표 3-18〉 SW사업 표준계약서 구성 방식 선호도 조사

구분	주요 내용
조사기간	2019년 9월 23일 ~27일
조사방법	전화 인터뷰
조사대상	SW기업 실무 담당자 10인
조사내용	표준계약서 구성 방식 선호도
결과	- 정보시스템 개발과 상용SW 구축의 과업 내용과 수행 과정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일 계약서 사용 시 문제 발생 우려 - 하도급거래가 많은 SW사업 특성 상 현재 보급되는 공정위의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통일성 유지 필요 - 과업형태별로 계약서가 통합될 경우 SW의 종류와 사업 유형별 특성이 세밀하게 반영되기 어려워 계약 내용의 부실 발생 우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처럼 패키지SW와 IT서비스 분야의 개발/구축과 유지관리, 임베디드SW 개발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제작(개발) 계약과 유지관리 계약의 두 유형의 차이는 인정하되, 정보시스템, 상용소프트웨어, 임베디드SW 계약서 간의 동일성은 최대한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계약서 각 조항의 문구가 좀 더 추상적으로 변하였지만, 각 분야의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 표준계약서 개발 원칙

SW사업 계약이 대부분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SW사업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표준계약서 개발의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도급법의 ‘하도급’은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② 다른 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하도급법이 규율하는 사업자도 요건이 존재하는 바, 원사업자는 일부 예외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중소기업자이지만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이 많아야 하고,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여야 한다.⁴⁵⁾ 따라서 하도급법의 내용 중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문(예를 들면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조항들이 다수 있다. 앞의 ①번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의 최종적인 인수자 또는 사용자가 되겠지만, 보통의 하도급은 ②번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결과물과 자신의 결과물을 합쳐서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현재는 삭제되었지만, 2018년도 배포된 표준계약서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바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②번 유형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하도급법과 그에 근거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를 규정하지만, 발주자가 매우 많이 언급될 수 밖에 없다.

45)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SW산업진흥법 상의 ‘하도급’은 도급받은 SW사업을 다시 도급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②번 하도급으로 좁혀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SW사업을 도급하는 계약서를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발주자’에는 SW사업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하며, 계약목적물의 최종적인 사용자 또는 인수자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발주자와 SW사업자인 원사업자로 전제하고 기술하였다. 다만, 하도급 승인 등 SW사업자가 또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관한 조문 또는 조항은 일부 존재한다. 그리고 이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공공SW사업과 민간부문 SW사업에서의 용어를 되도록이면 통일하고자 기획재정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과 SW산업진흥법(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SW진흥법을 포함한다.) 등 SW산업 및 계약과 관련된 법령의 각종 용어를 따랐다. 그 밖에 SW사업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비해서는 단순화하였다.

2. 주요 정부 정책 반영

(1)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SW사업 표준계약서이니만큼 현재 국회 심의 중인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하 ‘국회제출안’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SW사업 표준계약서의 근거규정인 제37조(공정계약의 원칙)의 내용을 계약서 조문으로 반영하였다.

제37조(공정계약의 원칙)

②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공공SW사업 혁신방안

다음으로 지난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이하 혁신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혁신방안은 공공 SW 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기 때문에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중 공공부문에 한정되는 내용-SW영향평가,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과업심의위원회 등-은 제외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였다.

〈표 3-19〉 공공SW사업 혁신방안 주요 내용

제도 개선사항	추진방안
요구사항 명확화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사전심사 제도 도입
과업 변경·추가시 적정대가 지급	▪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	▪ SW기업의 작업장소 선택 자유 보장
SW지식재산권 기업 활용촉진	▪ 기업 요청 시 SW산출물 제공
상용SW 활성화	▪ SW영향평가 의무화, 유지관리요율 상향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7),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3. 기존 표준계약서와 계약관행 분석 결과

SW 유관분야 또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 보급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계약서별 제정 취지, 주요 조항 중 SW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취합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표 3-20〉 기존 표준계약서 주요 참조 내용

항목	참고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손해배상	- 클라우드서비스 - 음반 제작 및 가창	- 손해배상의 범위를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로 한정 -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면책 규정 명시
지식재산권	- 연구개발서비스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 - 이러닝콘텐츠 개발	수주자 지식재산권 귀속 권리를 인정하는 타산업 사례와 관련 법령(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하여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인력관리	연구개발서비스업	도급계약인 SW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관리, 교체를 일체 금지하도록 내용 구성
현장대리인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의 수주자 인력에 대한 직접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현장관리자를 통한 업무지시 명시
과업범위	정보보호서비스	과업내용 확정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등을 명시
과업변경 시 대가지급	이러닝콘텐츠 개발	확정된 과업범위를 기준으로 변경사항 발생 시 계약금액, 기간 등을 변경하도록 관련 사항 명시
지급보증	방송프로그램 제작	원활한 계약 이행 담보를 위한 계약이행 보증금 납부 방법 명시
대금지급	연구개발서비스업	- 선급금 지급 및 최소 선급금 지급 비율 명시 - 선급금, 중도금, 잔금별 지급비율, 시기 명시
부당반품 금지	방송프로그램 제작	- 수주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반품할 수 없도록 내용 명시 - 수주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
분쟁해결	음반 제작 및 가창	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및 중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 명시

또한 앞서 실제 SW사업에서 사용된 제안요청서, 계약서 및 관련 부속 서류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사례들을 발굴하였는데, 각종 법률과 기존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넣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사업자의 보호에 조금 더 힘을 실었다.

4. SW사업 표준계약서의 전체구조 비교

새롭게 개발된 분야별 표준계약서 초안의 구조 파악을 위해 계약서별 조문 구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계약서별 특징과 주요 조문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야별 표준계약서 조문 구성은 〈표 3-21〉과 같은데, 개발구축 사업과 유지관리 사업 간의 차이가 정보시스템, 상용SW, 임베디드SW 분야의 차이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1〉 SW사업 표준계약서 조문 구성 현황

대분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상용SW 공급/구축	임베디드SW 개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상용SW 유지관리
총론	제1조 (목적)	○	○	○	○
	제2조 (정의)	△	△	△	△
	제3조 (기본원칙)	○	○	○	○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효력)	○	○	○	○
과업내용과 계약변경	제5조 (과업내용서의 확정)	○	○	△	△
	제6조 (계약체결 후 상황변화)	○	○	△	△
	제7조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	○	△	△
대금 관련	제8조 (대금의 지급)	○	○	△	△
	제9조 (계약이행보증금)	○	○	○	○
	제10조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	X	X
작업환경과 과업이행	제11조 (작업장소)	△	○	△	△
	제12조 (인력관리)	○	○	△	△
	제13조 (하도급)	△	△	○	○
납품과 검수	제14조 (납기와 계약기간의 단축)	○	○	X	X
	제15조 (납품)	○	○	X	X
	제16조 (수령 및 반품)	○	○	X	X
	제17조 (검사)	○	○	△	△
	제18조 (검사 후 인수)	○	○	X	X
	제19조 (계약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	X	X
	제20조 (지체상금)	○	○	X	X
품질보증과 하자보수	제21조 (품질보증)	○	○	X	X
	제22조 (하자보수 등)	△	△	X	X
	제23조 (하자보수보증금)	○	○	X	X
지식재산 및 기술지원 등	제24조 (지식재산권)	△	○	△	△
	제25조 (기술지원 및 교육)	○	○	X	X
	제26조 (기술자료 임치)	○	○	○	○
	제27조 (기술자료 제공)	○	○	○	○
	제28조 (비밀유지)	○	○	○	○
계약상 분쟁해결	제29조 (계약의 해제, 해지)	○	○	○	○
	제30조 (손해배상)	○	○	○	○
	제31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	○	○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기준, 동일조문 : ○, 유사조문 : △, 미적용 : X

제5절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표준계약서 등

이 절에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의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문을 아래의 계약전문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설명하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상용SW와 임베디드SW의 차이점을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표준계약서는 주로 공정위의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4종,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을 참조했기 때문에 주요 조문의 참조사례에서는 다른 표준계약서들을 주로 제시하였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표준계약서(전문)

1. 개발계약명 :
2.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납 기 일 : 년 월 일
4. 계약금액 : 금 원정(₩)
 - 공급가액 : 금 원정(₩)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구분	지급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금금*	%			현금
중도금 (지급회수: 회)	%			현금 %, 어음 %
잔 금	%			현금 %, 어음 %
합계	100.0%			

* 선금금은 현금으로 계약금액의 30% 이상으로 함.

5.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6. 과업내용서 발급시기 : 년 월 일
7. 미확정 과업내용 확정시기 : 년 월 일
 * 설계완료일 또는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의 기간으로 함

8.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으로 정함

9. 감사의 기준 및 방법: (별지로 정할 수 있음)

10.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 : 금 원정(₩)

당사자는 위 내용과 첨부된 기본계약서 본문,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소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과업내용서

3. 기타 서류(개별 약정서 등)

1. 총칙

(1) 목적(제1조)

가. 조문 내용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사업' (이하 '이 계약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개요

계약의 목적조항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당해 계약체결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향후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 계약서의 세부 내용들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의 통일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계약에 대한 해석 여지가 존재할 때 그 해석방향과 기준을 설정해주는 기능을 갖는다. 계약의 목적 조항은 대부분 포괄적인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통상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 본 표준계약서 제1조에서도 목적조항을 제시하면서 발주자와 소프트웨어사업자인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계약의 당사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로 통일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의미는 발주자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9호에서 정의된 ‘발주자’ 즉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 및 동법 제2조 4호의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로 상정하였다.

라. 참조한 표준계약서

타 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에도 계약의 목적조항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과업의 내용을 명시한 경우와 단순히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2〉 목적조항 관련 참조사례

표준계약서 명칭	조문 내용
게임(도급)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게임의 제작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이러닝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외주제작 및 납품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획·제작사가 제작하는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무대·소품·의상·분장·조명·음향 기타 장치 및 설비 등 제작·납품 또는 대여 등)의 내용 중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제2조)

가. 조문 내용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내용서”란 공급내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등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 계약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 의해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인도받는 이 계약의 최종적인 목적물을 말한다.
3.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납기”란 원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를 위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기일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5. “수령”이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비용”이란 계약목적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검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검사장비 등의 구입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7.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른다.

나. 개요

표준계약서 제2조에서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SW사업 계약 체결과 관련된 주요 부속 서류, 계약 수행 과정의 주요 절차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하였다.

먼저 계약이행의 중요한 부속서류로 과업범위의 기준이 되는 과업내용서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르도록 하여 용어 해석에 관한 다툼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 참조 표준계약서

임베디드SW, 게임SW 표준계약서의 경우 주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계약서 내 명시하였다. 그러나 방송, 이러닝 산업 표준계약서는 별도 조항을 통한 용어 정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로 용어를 정의한 계약서의 경우에도 규정되지 않는 나머지 용어에 대해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는 예비적 성격의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3〉 정의 조항 참조사례

표준계약서 명칭	조문 내용
게임(도급)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금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게임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제작비용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말한다. 2. "시용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 콘텐츠의 일부로 구성되거나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대금, 저작권재산권료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기일에 게임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게임물 관련사업자"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특정 임베디드SW 개발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

	보통신단체표준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는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과업범위,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공급자의 제안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3.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특허법」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을 의미한다. 5.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구조도(아키텍처Architecture),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의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6. '임베디드 시스템(Embedded system)'이라 함은 각종 전자제품이나 정보기기 등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전자제어시스템을 말한다. 7. '타겟 시스템(Target system)'이라 함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이식·장착(포팅Porting) 될 시스템을 말한다.
--	--

라. 상용SW와 임베디드SW의 차이점

상용SW는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써 기능하기 때문에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이 정상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총괄검사’와 그에 맞춰 수정하는 ‘커스터마이징’을 추가로 정의했다. 임베디드SW에 관한 정의 및 임베디드SW가 탑재되는 발주자 제품을 의미하는 ‘타겟 시스템’을 정의하였다.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총괄검사"란 계약목적물을 포함하여 발주자가 완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9.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발주자의 설치환경에 정착/연동시키기 위하여 재구성 또는 재설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란 각종 전자제품이나 정보기기 등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전자제어시스템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타겟 시스템(Target System)"이란 이 계약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전자제어시스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전자제어시스템을 포함한 발주자의 제품을 말한다.

(3) 특약의 성립(제4조)

가. 조문 내용

제3조 (기본원칙)

-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한다.
- ②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효력)

- ① 양 당사자는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의에 따라 이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의 특약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방이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이 성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나. 개요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외에도 얼마든지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SW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합의에 따라 상세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준수해야 할 법령의 범위를 강행법규로 한정할지 임의법규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감안하면 강행법규로 한정하는 것이 맞으나, 법령이 가지는 대표성을 감안하여 임의법규까지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구성하였다.

특약의 성립에 대해 간주조항을 거부로 할지 승낙으로 할지는 계약당사자들 간에 정할 문제인데, 여기서는 서면 통지 후 10일 이내에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기 위해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있다.

라. 참조한 표준계약서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에 대한 절차 및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사례는 쉽게 발견되는데 비하여,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공정위의 조선제조임가공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계약서에 개별약정에 대한 조문이 있으며,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에서 특약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공란을 제시하고 있다.

위 두가지 공정위의 표준계약서에서는 ① 개별약정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과 다를 때는 관련법령이 우선한다는 내용, ② 기본계약과 개별약정 외에는 관련법령의 강행법규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다.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법령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①번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련법령의 임의규정을 준수한다는 조문과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1)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계약서

제42조(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제43조(계약 이외의 사항)

-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시설공사관련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한다.

2) 조선제조임가공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56 조 (개별약정)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 ③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제조·임가공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체결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제조·임가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되거나 관련법령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회 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④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57 조 (계약 이외의 사항)

- ① 기본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한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44조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④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명령·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 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물의 생산 및 제조과정 및 최종납품을 위한 포장과정에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수급사업자는 제조공정간 발생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 ⑧ 수급사업자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 ⑨ 수급사업자는 제12조에 의거 원사업자의 승인 하에 재하도급을 시켰을 때에도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에 대한 본 기본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제16조 (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본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상호 협의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써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특약사항)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정하기로 한다.

1. (계약당사자가 직접 기재하는 난)
- 2.
- 3.

2. 과업내용과 계약변경

(1) 과업내용서의 확정(제5조)

가. 조문 내용

제5조 (과업내용서의 확정)

- ① 발주자는 제안요청서와 원사업자의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서를 확정한다. 과업내용서에는 모든 과업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의 일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 과업내용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사업자에게 과업내용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게 된 사유와 장래에 과업내용을 특정할 기일(이하 '예정기일'이라 한다)로 정하여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예정기일은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에(특약으로 설계완료일이 명시된 경우에는 설계완료일로 한다) 있어야 하며, 예정기일이 되어도 발주자가 과업내용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특정하여 과업내용서를 확정할 수 있다.
- ⑤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항의 예정기일 이전이라도 발주자에게 발급 당시 특정되지 않은 과업내용을 특정하여 과업내용서를 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초 위탁된 과업의 범위가 현저히 변경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2. 원사업자의 과업 진척율이 50%에 도달한 경우
- ⑥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확정된 과업내용서를 토대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 ⑦ 원사업자는 확정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진다.

나. 개요

입찰로 진행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구축사업은 발주자의 제안요청서(RFP)에 대해 다수 SW사업자가 제안서(Proposal)을 내고 발주자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W사업자와 발주자가 다시 기술협상을 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중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상용SW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사업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그러나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등 계약체결 단계의 자료들로는 대상 정보시스템의 기능적·비기능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자와 사업자가 계약체결 단계에서 합의한 이 사업의 최종적 결과물의 완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정의서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이 계약사업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 역할을 하는 문서를 ‘과업내용서’로 상정하였다. 아울러 수많은 과업들 중 일부를 계약 초기에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확정된 일부 과업을 확정하는 기한을 정하여 과업내용서를 임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당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라도 작업진척도나 현저한 과업변경 시에 과업내용서가 초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확정된 과업이 확정될 때에는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변경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확정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명시하여, 이후 예상되는 발주자 측의 과업변경이나 계약변경의 요청을 최소화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기획재정부 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서는 계약문서로서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와 함께 과업내용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 예규 제49조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에 관한 각종 개념을 정의하면서 “과업내용서”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참조 표준계약서

과업범위를 간략하게 계약서 내에 기재하거나, 본 연구와 같이 과업내용서 같은 별도의 부속서류를 통해 상세한 용역의 내용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표 3-24〉 과업내용 관련 참조사례

명칭	조문 내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제4조 (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프로그램명 : 2. 제작 형식 :

	3. 프로그램 주요내용 : 4. 제작 편수 : 회 (비드라마의 경우 계약 기간 : ~) 5. 방송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6. 길이 : 매 편당 분(편성시간 기준) 7. 주요 제작 스태프 및 실연자 - 연출자 : - 작가 : - 주요출연 : 8. 기타 :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제2조 [과업의 내용] ①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과업내용서로 한다. ② 과업내용서에는 반드시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 분량, 미디어 품질, 제작언어 등 상세한 을의 과업 내역 2. 검사기준, 검사책임자, 검사비용 부담주체 3. 지식재산권 확보 내역 및 확보주체 4. 기본 가이드 정보의 제공시기 및 내역 5. 기타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계약체결 후 상황변동(제6조)

가. 조문 내용

제6조 (계약체결 후 상황변동)

-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관련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과업내용과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협의를 완료되면, 협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개요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된 계약금액 산출의 기초가 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가 올라서 생기는 전체 소요비용의 증가를 원사업자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調整)을 명시하고 있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라. 참조 표준계약서

1) 디지털콘텐츠(도급) 표준계약서

제21조(기획 등의 변경 또는 물품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대금등의 증액)

- ①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획 등이 변경되거나 콘텐츠의 제작에 필요한 물품 등의 가격이 변동되는 등과 같은 경제상황이 변동되어 콘텐츠의 제작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등을 증액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내에 수급사업자와 대금등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3)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제7조)

가. 조문 내용

제7조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합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설계 또는 구현이 진행 중인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감소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발주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과업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때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기존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결정한다.
- ④ 발주자는 과업내용 중 과업범위, 과업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아직 설계 또는 구현이 시작되지 않은 과업의 축소 또는 과업물량의 감소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원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 ⑥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 또는 이 조에 따른 과업변경에 따라 다시 확

정된 계약조건이 이 계약과 다른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⑦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일정기한을 정한 후 계약상대방이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⑧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이나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⑨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1. 양 당사자가 과업의 변경에 관해 합의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2.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4.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개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사업에서는 보다 나은 정보시스템의 개발/구축을 위해 사업 수행 중에 과업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의 과업 변경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과업 또는 이미 구현된 과업의 변경이며, 원사업자가 요청하거나 과업의 삭제, 축소 또는 감소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 중 원사업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사업수행기간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발주자의 구두 작업지시로 인해 과업변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발주자의 구두 작업지시를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손쉽게 서면에 의한 과업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과업내용의 축소로 인한 감액의 요건과 상호합의도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 중에서도 SW사업자가 투입인력을 줄이면 발주자가 사후정산 시 이를 감액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발주자의 이익 추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나, SW사업자가 자신의 경영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을 막아 SW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며,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지장이 없는 한 SW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은 과업변경이나 계약변경에 대해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여 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중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이 조문과 유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일부 내용,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관련된다.

라. 참조한 표준계약서

1)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제9조(수급사무내용의 변경)

-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유사 게임이 이미 제작된 경우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에서 정한 수급사무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대금등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금등을 증액한다. 다만, 그 연장기간 또는 증액이 과도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원사업자는 그 수급사무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 등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임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④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수급사무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특정 임베디드SW 개발 표준계약서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과도한 부품가격의 변동, 임금의 상승 등 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변경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보수청구기준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 ③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1조(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 계약 외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추가·변경공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 ② 추가·변경공사와 관련된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기재한다. 다만, 착공 전까지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곤란한 사유 및 확정에 대한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 지체 없이 새로운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다.
-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변경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제12조(추가·변경공사 추정)

- ① 원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위탁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1.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④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변경공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3. 대금 관련

(1) 대금의 지급(제8조)

가. 조문 내용

제8조 (대금의 지급)

- ① 발주자는 이 계약의 이행 대가로 계약 전문과 같이 원사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② 발주자는 계약전문에서 정한 선급금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③ 원사업자는 계약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잔금청구는 검사에 합격한 때에 한한다.
- ④ 발주자는 제3항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영업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추가로 5일까지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주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발주자가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⑦ 발주자가 이 조에서 정한 정당한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리 15.5%로 한다.

나. 개요

계약대금의 지급은 보통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지기 때문에 계약전문 의 서식에 각 금액과 지급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에 따라 이행하면 된다. 선급금은 최소 비율을 전체 계약의 30%로 설정하였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또는 원사업자와 합의하여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발주자의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을 참고하여 지연이자 사항을 규정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는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동 예규의 제28조에서는 발주자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토록 하고 있어 하도급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 표준계약서는 민간부문의 SW사업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의 용역에 관해 적용되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지연이자율 대신에 민간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 적용되는 하도급법 상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였다.

라. 참조 표준계약서

〈표 3-25〉 대금지급 참조사례

표준계약서 명칭	조문 내용
디지털콘텐츠 제작	제23조(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대금의 ()%를 선급금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정한 선급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계약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제24조(대금등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대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1. 대금등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 그 지정일자. 다만, 잔금의 경우 그 시 기까지 콘텐츠가 납품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일자를 지급기일로 한다. 2. 대금등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콘텐츠를 납품받은 날 3. 콘텐츠를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등의 지급기일을 정 한 경우 : 콘텐츠를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4. 납품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 일을 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②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콘 텐츠의 납품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연 6%의 지연이자 2. 제3호의 경우 : 연 20%의 지연이자 3. 제1호의 경우로서 콘텐츠의 납품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제1호에서 정한 지연이자와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방송프로그램 제작	제6조(하도급 대금) ① 하도급 대금은 수급내용의 성질, 저작권 소유,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 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연동 인 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중 동조 제1항에서 정한 하도급 대금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 ‘회사’는 상대방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방송사의 경우, 편성이 확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작사’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한 사 업자(방송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과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은 계약 이행의 용도로만 사용 되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선급금을 제작용도로 사 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증권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1. 선급금 원 (하도급 대금의 (20%)) 2. 지급시기 년 월 일 ⑤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수급내용을 완성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에게 인도하였으나 ‘방송사 또 는 제작사’의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회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금(제9조)

제9조 (계약이행보증금)

로 대신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하여 발주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발주자는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사업자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요

다양한 분야의 표준계약서에는 사업 실패에 대한 발주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이행 보증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SW사업 표준계약서도 이행보증 관련 사항을 포함하였다.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현금납부 외에 각종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계약이행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상한을 설정하여 원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는 각종양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 체결 시 이행 보증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의 내용을 인용하여 계약이행 보증 절차를 분명히 하였다.

라. 참조한 표준계약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 실패는 발주자에게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계약이행 보증 관련 조항

을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3-26〉 계약이행보증 관련 참조사례

명칭	조문 내용
민간건설공사 도급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수급인”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5일 이내 “도급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제6조(계약이행보증) ① 방송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총액(선급금에 대한 보증대상 금액은 제외한다)의 (5%)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보증 기간은 방송 시작일부터 방송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방송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작사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방송사는 제작사에게 계약총액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3)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제10조)

가. 조문 내용

제10조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① 발주자는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합의를 얻어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 발주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2. 발주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개요

대금의 지급 수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물품으로 변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서는 지급수단으로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언급하고 있으며,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서는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SW사업에서는 하도급법 제17조의 예외적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합의를 얻은 경우에만 대물변제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대가의 지급)에서는 대가의 지급수단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하여 국가계약에서의 대가지급수단은 현금이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더라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라. 참조한 표준계약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9조(대물변제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대물변제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 받은 대금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4. 작업환경과 과업이행

(1) 작업장소(제11조)

가. 조문 내용

제11조 (작업장소)

-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기에 미흡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장소를 작업장소로 지정한다.
- ②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작업장소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인력이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작업장소 내의 설비 등 전반적인 작업환경에 관한 안전 및 보건 상의 책임을 진다.
- ③ 원사업자의 인력은 작업장소에서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즉시 이를 신고하고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가 작업장소를 지정한 경우 원사업자는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⑤ 원사업자는 선임된 현장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 ⑥ 발주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관리인에게 행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거나 제3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배상한다.

나. 개요

작업장소와 관련한 논란이 많아서 그 기준을 명시하였다. SW개발의 특성상 일반적으로는 작업장소가 사업수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SW사업자는 자신의 사무소 등을 포함한 원격지 개발을 선호하는데 발주자가 자사 내부 또는 인근에서 개발 작업을 하라고 요구하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SW사업자가 원하는 작업 장소를 발주자가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상으로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작업장소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주자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한 원사업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장소를 작업 장소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곳이 작업장소가 되면 해당 비용과 안전보건 상의 책임을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주자가 지정한 작업장소에서 지금까지 발생해 온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논란을 없애기 위해 발

주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현장관리인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의 위험, 비용, 책임, 기타 손해배상책임을 발주자에게 귀속시켰다.

다. 관련 법령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르기 위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과 근로자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제1항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발주기관이 예산편성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취지로 보인다.

라. 상용SW 공급/구축 사업의 차별점

일반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는 상용SW의 공급/구축 사업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사업과 성격상 거의 유사하다. 다만, 결과물이 하드웨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수정된 상용SW이기 때문에 제8항을 신설하여 상용SW의 설치를 위한 별도 규정을 삽입하였다.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제11조 (작업장소)

- ⑧ 원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발주자의 전산실 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제시하는 보안 및 안전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참조 표준계약서

〈표 3-27〉 작업장소 참조사례

표준계약서 명칭	조문 내용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제12조(안전배려의무 등) ① 기획.제작사가 협력사의 본 계약상 용역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한 경우 기획.제작사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장소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용역수행 장소의 보호 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력사는 기획.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변경 또는 안전시설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기획.제작사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계약상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제작사와 협력사는 상호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7조(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건설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②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

-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⑥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18조(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 ①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수급사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19조(응급조치)

- ①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 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2) 사업수행 시 관리감독(제12조)

가. 조문 내용

제12조 (사업수행 시 관리감독)

- ① 발주자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자료에 기초하여 원사업자의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원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원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인력관리의무를 다한다.
- ④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기타 사회보험법령 상의 책임을 진다.

나. 개요

SW사업계약은 도급계약으로 계약목적물의 완성이 계약이행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도 발주자가 관리감독을 이유로 SW사업자의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맨먼스(Man-Month) 방식이라고 하는 투입인력의 수와 인건비 기준에 따라 사업규모를 가늠하고 계약을 체결하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SW사업자들은 도급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다며 투입인력 수와 기간 등을 관리하는 ‘헤드카운팅’을 금지하라고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다⁴⁶⁾. 제도적 개선노력은 2016년부터 이뤄져 왔으며, SW산업진흥법에 근거한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여 발주자는 계약이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되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업관리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의 인력관리의무와 소속인력에 대한 사회보험 법령 상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46) http://www.zdnet.co.kr/view/?no=20180911164648&re=R_20190116172202

다. 관련 법령 등

〈표 3-28〉 인력관리 참조법령

명칭	조문 내용
SW산업진흥법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일반기준	제9조(공급자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서 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기초하여 공급자의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공급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④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인력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감리용역사업 3. DB 구축 및 자료 입력,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4.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

라. 참조 표준계약서

〈표 3-29〉 인력관리 참조사례

명칭	조문 내용
조선업종 표준계약서	제24조(근로자 등) ①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이행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작업의 수행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의 수행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교체

	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작업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조선제조임가공 표준하도급계약서	제 24 조 (근로자 등) ①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이행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제조·임가공의 수행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조·임가공의 수행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그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당해 제조·임가공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3) 하도급(제13조)

가. 조문 내용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제13조 (하도급) (1안) ①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2안) ① 원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제3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제3	제13조 (하도급) (1안) ①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2안) ① 원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제3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제3	제13조 (하도급) (1안) ①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2안) ① 원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제3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제3

자를 선정할 것'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를 선정할 것'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를 선정할 것'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나. 개요

이 표준계약서는 발주자-원사업자 사이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지만 원사업자의 하도급에 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SW사업에서는 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SW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민간부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 사전승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이라는 표현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른 분야의 도급계약서들도 모두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따랐다. 다만, (2)안에서 보듯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선택권을 부여하더라도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계약당사자 간의 신의관계 유지에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원사업자의 이행의무를 유지하였다. 아울러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하도급업체를 지정하는 경우를 막고자 하도급거래의 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SW진흥법(국회제출안)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또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	---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2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수급사업자를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라. 참조 표준계약서

게임(도급) 및 게임(하도급) 표준계약서,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원사업자의 동의 하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3-30〉 하도급 참조사례

표준계약서 명칭	조문 내용
게임(도급) 게임(하도급)	제12조(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정한 수급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수급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태만히 하지 않은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8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5. 납품과 접수

(1) 납품(제14조), 수령 및 반품(제15조), 검사(제16조), 검사 후 인수(제17조), 계약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제18조)

가. 조문 내용

제14조 (납품)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한 납품기한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한다. ② 원사업자는 납품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원사업자의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④ 제3항의 납기조정이 불가항력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일체의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수령 및 반품)

-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납품 또는 제공한 계약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의한 검사(발주자의 의뢰에 의한 제3자 검사를 포함한다)가 개시된 때, 이하 같다)에는, 수령증명서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 ②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반품하지 아니한다.
- ③ 반품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또 다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계약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경우
 3. 발주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경우
 4. 발주자가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제16조 (검사)

-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과업내용서가 확정된 다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② 검사의 대상은 과업내용서의 과업(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함)으로 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 ③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을 수령한 날 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검사대상 계약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합의하여 별도의 검사기간 및 통지기한을 정할 수 있다.
- ⑥ 발주자 또는 제3자에 의한 검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검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 (검사 후 인수)

- ① 발주자는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지체 없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검사결과에의 통지 시에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원사업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2회에 한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원사업자는 불합격된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조치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한 기간 내에 원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 ⑤ 원사업자가 제4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 ⑥ 계약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발주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18조(계약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① 원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원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요

계약이행이 거의 완료되어 검사를 위해서 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의 지배관리 하로 이전하는 행위가 납품 또는 수령이다. 납품 또는 수령 이후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는데, 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을 지체없이 인수해야 하고, 원사업자는 잔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납품된 계약목적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검사를 일부러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원사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같은 취지로 불합격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2회에 걸친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으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검사로 인한 비용이나 불합격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인수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여 발주자도 어느 정도 보호하도록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검사 및 인도)는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계내용대로 준공되어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31〉 납품과 검수 참조법령

법령 명칭	조문 내용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既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건설산업 기본법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라. 참조 표준계약서

〈표 3-32〉 납품과 검수 참조사례

명칭	조문 내용
게임(도급) 표준계약서	제15조(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게임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원사업자가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납품한다. 1. CD 등 유체물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원사업자가 정한 장소 2. 온라인으로 납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웹하드 등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게임을 납품받은 경우,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16조(납품기한의 연장)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게임을 납품할 수 없는 경우, 표지에서 정한 날까지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승낙한다. 다만, 그 기한의 연장이 과도한 경우, 합리적인 기한으로 단

	축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기간 동안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22조(공사목적물의 인도)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정한 준공기일까지 공사목적물을 인도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준공기일 전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준공기일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인도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준공기일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공사목적물을 인도할 때에 현장근로자·자재납품업자 또는 건설장비대여업자(이하 “현장근로자등”이라 한다)에게 임금·자재대금 또는 건설장비대여대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사목적물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인도하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다시 인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4조(검사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또는 준공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부분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공사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원사업자가 기성 또는 준공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5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디지털콘텐츠 제작	제18조(검수 및 이의신청)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콘텐츠가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수한다. ② 콘텐츠에 대한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콘텐츠를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원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하여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하 생략>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제10조(완수검사 및 하자보수 등) ① 기획·제작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무대세트, 조명·음향·영상장비의 설치 등)에 대한 완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협력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방법으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제작사는 별도의 검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담당자를 검사인으로 본다.

	② 협력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하였을 경우 기획.제작사에게 용역내용에 대한 완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제작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검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내에 완수 여부를 확인해주어야 한다(이 기간 내 완수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합격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획.제작사가 용역 제공된 내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기획.제작사의 검사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완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할 때에는 기획.제작사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한다. ④ 용역제공 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수급업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협력사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급업무의 하자가 기획.제작사의 요청 또는 지시 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 2. 수급업무의 하자가 기획.제작사가 공급한 설비 또는 자재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의 하자가 중대하고 완전물급부 또는 보수가 불가능하여 수급사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획.제작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2) 지체상금(제19조)

가. 조문 내용

제19조 (지체상금)

- ① 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을 1천분의 0.75와 지체일수를 곱하여 나온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계약기간 내에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개발 등의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 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 중 일부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과업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중단된 경우
 3.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발주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4.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할 경우(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5. 기타 원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 검사 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어 발주자가 원

사업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다음날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나. 개요

현재의 계약관행은 계약기간 내에 납품된 경우와 계약기간 후 납품된 경우 각각에 대해 지체일수 산정 기준이 거의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지체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기준, 지체상금요율이 문제가 된다.

국가계약법 상의 지체상금요율은 물품과 용역이 같이 포함된 SW사업이 1천분의 0.75, 용역만 있는 SW사업이 1천분의 1.25로 각각 다른데,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은 통상 물품과 용역이 같이 포함되며, 그 밖의 SW사업도 원사업자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지체상금요율로 1천분의 0.75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기성부분의 범위를 계약기간 내에 검사를 마치지 않았지만 검사결과가 합격인 부분 부분까지 넓혀서 계약금액에서 기성대금의 공제범위를 넓혀 원사업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표 3-33〉 지체상금 참조법령

법령 명칭	조문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

	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이하 생략)
--	--

라. 참조한 표준계약서

<표 3-34> 검사 참조사례

명칭	조문 내용
디지털콘텐츠 제작(도급) 표준계약서	제27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내에 콘텐츠를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대금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체상금은 연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수급사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수급사무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콘텐츠를 납품한 경우, 그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수결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콘텐츠를 납품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제24조(지체상금) ① '회사'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급내용 완성물 및 역무를 납품·제공하지 못한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제51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

	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초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	--

6. 품질보증과 하자보수

(1) 품질보증(제20조), 하자보수(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제22조)

가. 조문 내용

제20조(품질보증)

- ① 계약목적물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계약목적물이 이 계약 및 부속 서류(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③ 원사업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하자보수 등)

-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사를 완료하여 계약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즉시 무상으로 그 하자를 보수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시스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계약목적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주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유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하자보수보증금)

- ① 양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발주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규모와 보증서에 관하여는 제9조(계약이행보증금)제1항을 준용한다.
- ②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보증보험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③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원사업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이 하자보수보증금 보다 큰 때에는 그 차액만큼을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개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재개발에 관한 비용 부담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과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을 토대로 하였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율의 상한선을 2%에서 10%로 늘렸고, 하자보수요구에 불응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몰수하는 규정은 하자보수의 보증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아서, 하자보수 소요비용에 충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표 3-35〉 하자보수 참조법령

법령 명칭	조문 내용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라. 참조 표준계약서

〈표 3-36〉 하자보수 참조사례

명칭	조문 내용
국제기술용역	제55조 (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협력단이 제18조의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 중 "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협력단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협력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협력단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력단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협력단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협력단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협력단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협력단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 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지털콘텐츠 제작	제28조(하자담보책임) ① 검수에 합격한 콘텐츠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콘텐츠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의 하자보수 또는 제2항의 계약해제와 별도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콘텐츠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식재산 등의 성질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식재산 등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는 제18조에 따라 콘텐츠에 대한 검수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게임(도급) 표준계약서	제32조(하자담보책임) ① 검사에 합격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원사업자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마. 상용SW와 임베디드SW의 차이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과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유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정도이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제21조 (하자보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기능변경, 사용 방법개선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 시스템의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주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제21조 (하자보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기능변경, 사용 방법개선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주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제21조 (하자보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기능변경, 사용 방법개선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 목적물이 탑재된 발주자 제품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상주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7. 지식재산 및 기술지원 등

(1) 지식재산권(제23조)

가. 조문 내용

제23조 (지식재산권)

- ① 원사업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거나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별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생성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계약목적물 중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및 지분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2항의 소프트웨어 등 결과물을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계약목적물의 사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공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이 계약 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 ⑥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계약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나. 개요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어문저작물로서 창작한 때로부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없이 저작권이 발생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담긴 아이디어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될 경우 특허로 등록도 가능하다. 또한 신규 소프트웨어의 제작 뿐 아니라 기능 추가 또는 하자보수를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면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이 되는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권리도 저작권의 한 종류이다. 저작권, 특허권 등을 통틀어 지식재산권이라 하는데 지식재산권은 저작인격권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체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만들어서 원시적인 저작권자가 되지만 발주자가 자신의 요청과 자금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서 내에 지식재산권의 양도조항을 넣어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중요 자산인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이 발주자 등 제3자에게 손쉽게 양도된다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발주자가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가 단독으로 소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영업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조문을 구성하였다.

계약체결 이전에 존재하던 지식재산권이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창출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은 정당한 권리자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줄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 다음으로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규정한 후 제3자와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주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저작권법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전부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제4항에서 이차적 저작물 작성을 포함해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표 3-37〉 지식재산권 참조법령

명칭	조문 내용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

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라. 참조한 표준계약서

〈표 3-38〉 지식재산권 참조사례

명칭	조문 내용
국제기술용역	제5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협력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식재산권은 본 계약 제37조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협력단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29조(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시공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도급 표준계약서	제10조(지식재산등의 이용 또는 구매) ① 수급사업자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원사업자의 지식재산, 시설 또는 장비 등(이하 '지식재산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지식재산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상인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용 또는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경우, 원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그 지식재산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함에 있어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는 통상의 이용료 또는 대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료 또는 대가를 청구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등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이용료 또는 대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⑥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원사업자의 지식재산등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이 계약에 따른 콘텐츠 제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제3자의 지식재산권의 이용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원사업자와 그 사용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는 그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용조건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이 계약에서 정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에 제3자로부터 그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고지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활동업종 표준화도급 계약서	제7조(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및 출원) 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과업의 수행과 관련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당해 위탁받은 과업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원사업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신청인은 위탁과업의 수행과 관련 원사업자 또는 신청인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생산한

	목적물 및 그 생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급사업자가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목적물 제작을 요청할 수 없으며,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기본계약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목적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

(2) 기술지원 및 교육(제24조), 기술자료 제공(제25조), 기술자료 임치(제26조), 비밀유지(제27조)

가. 조문 내용

제24조 (기술지원 및 교육)

- ①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 ②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 ③ 제2항의 교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따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 발주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이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2. 발주자가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
 3. 발주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이 이 계약 이행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

제25조 (기술자료 제공)

-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으로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가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⑤ 발주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4항제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합의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3. 기타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목적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치기관에게 원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27조 (비밀유지)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제공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 ④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 ⑤ 비밀준수기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나. 개요

SW사업의 주요 산출물인 SW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 사용법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 종종 요구된다. 또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에서는 발주자가 SW사업자의 설계문서나 소스코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SW사업자로부터의 기술지원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SW의 개발 과정에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긴밀한 자료교환이 요구되기도 하며, 쌍방의 기술적 영업적 비밀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SW사업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발주자가 SW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비롯한 각종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후 SW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러므로 원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술지원과 교육의 범위, 기술자료 제공의 요건과 한계, 원사업자의 부도 등 유지관리서비스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그리고 비밀유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조문을 제시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과 신용회복 조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SW의 임치제도는 저작권법 제101조의7에 규정되어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임치가능한 기술자료의 범위와 교부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표 3-39〉 기술자료 및 비밀유지 참조법령

명칭	조문 내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4조(시효)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저작권법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참조 표준계약서

〈표 3-40〉 기술자료 및 임치제도 참조사례

명칭	조문 내용
디지털콘텐츠 도급 표준계약서	제16조(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허가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앱 등에 게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수급사업자가 직접 앱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원사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저작권 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 등록을 위해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6.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7. 원사업자의 기술을 전수·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동 전수·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8. 콘텐츠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원사업자가 그 하자를 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

〈표 3-41〉 비밀유지 참조사례

명칭	조문 내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제28조(비밀 유지)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 플롯 등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디지털콘텐츠	제5조(비밀유지)

제작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공연예술 출연	제12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엔지니어링 업종 표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 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8. 계약상 분쟁해결

(1) 계약의 해제·해지

가. 조문 내용

제28조 (계약의 해제, 해지)

-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과업변경의 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원사업자가 최초 예상했던 과업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술력 및 인력으로 동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동 과업수행으로 인해 원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②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주는 경우
 - 3.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4.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부분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해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⑦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주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손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개요

계약 해제, 해지권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에 부여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일부 SW사업 계약은 수주자인 SW기업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기에 수발주자 모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였다. SW사업계약은 사업수행 기간 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업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취소에 해당하는 해제는 발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해지의 경우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계약당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게 하되, 상대방의 동의없이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원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이

행지연, 대가 미지급 등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두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은 즉각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임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계약 이행보증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또는 위약벌인지 논란이 있어 왔다. 위약벌은 실제 발생하는 손해와는 관계없이 일방이 타방의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으로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산정되며, 위약벌의 액수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법원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그러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해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 사안 별로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위험부담의 분배를 공정하게 이룰 수 있다. 때문에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명확히 하고자 원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발주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손해배상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⁷⁾

과업내용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계약금액이 현저히 감액될 상황에서 SW사업자의 계약해지권을 명시할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아래 참조 사례에 인용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금액이 40% 이상 감소하면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SW사업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SW사업 대금감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워 반영하지 않았다.

다. 관련 법령 등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

47)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로 계약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참조
http://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807261336538780235#cb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서는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면서 동시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42〉 계약해지 참조법령

명칭	조문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 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라. 참조한 표준계약서

대부분의 산업별 표준계약서에서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경우 기성부분 정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24조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

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 지급, 표절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프로그램이 제18조제1항의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가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제작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 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권 양도, 부도, 파산, 회생 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② 동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제34조(“갑”의 계약해제 등)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을”의 계약해제 등)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계약해지시의 처리)

- 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②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가 본 계약과 관련된 구성원들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획.제작사와 협력사가 협의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제공의무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거나 필요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력사가 수급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현저하게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5. 기획.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의 수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력행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협력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기획.제작사 또는 협력사의 파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손해배상(제29조)

가. 조문 내용

제29조 (손해배상)

-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개요

손해배상 조항이 발주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와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3배 배상을 도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의 책임)과 공정위에서 배포하는 각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사업자(발주자)의 특정한 계약위반⁴⁸⁾에 한해 실제 손해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3배 배상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의 책임)에는 원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표 3-43〉 손해배상 참조법령

명칭	조문 내용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4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한 목적물 반품, 기술자료 유용과 보복조치 등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해 3배 배상이 인정된다.

된다. (이하 생략)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라. 참조표준계약서

〈표 3-44〉 손해배상 참조사례

명칭	조문 내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제25조 (손해배상)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면책한다. ② 방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송사의 행위가 제2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제작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이미 제작된 횟수의 제작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고정비용을 포함한다)를 제작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작사가 본 계약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 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납품을 하지 않아 결방으로 인한 손해 3. 프로그램 작가 및 제작 스태프 등의 책임과 의무 수행 문제로 결방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4. 제18조제1항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5. 제5조제10항의 자료가 허위일 경우 발생하는 손해 ⑤ 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프로그램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방송사의 책임으로 프로그램 제작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제작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⑥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 협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제19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의 협력이 필요한 용역에서 "갑"의 협력의무 해태 등으로 인하여 "을"의 이러닝콘텐츠 제작이 지연된 경우 "갑"은 "을"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③ "을"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러닝콘텐츠를 납품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을"은 "갑"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다만, "을"이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디지털콘텐츠 도급	제26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원사업자가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6항, 제20조 제1항·제2항, 제22조 제1항·제2항 및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

(3) 이의 및 분쟁의 해결(제30조)

가. 조문 내용

제30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법적 지위와 분쟁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5.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개요

계약과 관련된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도 소송절차로 바로 이행하기 보다는 조정과 중재 같은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발주자의 관할법원으로 재판관할을 제한하는 것 대신에 이러닝 콘텐츠 용역 계약서를 본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규정하여

원사업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다수의 법률에서 사적 분쟁적 성격의 사안을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제48조의2에서는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하도급법에서도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도 가능하다.

한편 약관규제법에서는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라. 참조 표준계약서

타 산업 표준계약서에도 관련 법령에 명시된 분쟁조정기구를 활용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표 3-45〉 이의 및 분쟁해결 참조사례

표준계약서 명칭	조문 내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제29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법원에서의 소송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간건설공사 도급	제4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상사중재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9. 상용SW 관련 특례조문

(1) 사용특약(제31조)

가. 조문 내용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2018년도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1조 (상용소프트웨어 사용의 특약)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가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동 사용허가권한을 입증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용기간 동안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이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③ 계약에 의하여 사용 허가된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권한을 갖는다. 1. 기계 및 관련 장치에 상용소프트웨어를 기억, 전송 또는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 2. 상용소프트웨어 사용의 보조로서 제공되는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고 복사하는 것 3. 사용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 ④ 발주자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한 백업(Back-up) 및 발주자의 직원 등에 대한 교육용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상용	제32조 [상용소프트웨어 사용허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체결된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 허가된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용권한을 갖는다. 1. 기계 및 관련 장치에 상용소프트웨어를 기억, 전송 또는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 2. 상용소프트웨어 사용의 보조로서 제공되는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고 복사하는 것 3. 사용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 ② 원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한 백업(Back-up) 및 원사업자의 직원 등에 대한 교육용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수급사업자가 제공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2018년도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소프트웨어 및 그 기술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	하는 상용소프트웨어 및 그 기술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

나. 해설

상용SW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2018년도 공정위의 상용SW 공급/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있던 제32조(상용소프트웨어 사용허가)⁴⁹⁾를 약간 변형한 것이다.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상 저작권법 상의 일시적 복제 등의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만든 특례조문으로 보이는데 2019년도에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조문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2) 협조의무(제31조)

가. 조문 내용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2018년도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2조(원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발주자가 총괄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주자에게 협조한다. 단, 협조의 범위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이 계약의 계약목적물과 그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의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원사업자와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의 원사업자의 협조의무는 발주자의 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	제25조【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3조의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이하 "총괄검사")를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검사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협조한다. 단, 이러한 협조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에 한정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①항의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49) 2018년 공정위 상용SW공급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2018년도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금은 잔금의 10%로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를 넘지 않는다.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최종 잔금의 10%로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5%를 넘지 않는다. ④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가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의 요청시 동 사용허가권한을 입증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공급내역서에 명시된 사용기간 동안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이 당해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및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나. 해설

하도급 관계에서는 발주자의 총괄검사를 통과해야 원사업자가 잔금 등 대금을 지급받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상용SW 등의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한 총괄검사를 통과하기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역시 2018년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존재하나 2019년도에 삭제되었는데, 이 계약서에서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2019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수급사업자의 협조 의무)의 제4항과 제5항은 조항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이 계약의 제31조(사용특약)으로 이동시켰다.

10. 임베디드SW 관련 특례조문

(1) 타겟 시스템 제작비용(제31조)

가. 조문 내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개발 (성과보수 추가지급)
제00조 (타겟 시스템 제작비용)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가 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 계약목적물을 타겟 시스템에 탑재	제3조(기본보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공급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타겟 시스템에의 이식 테스트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개발 (성과보수 추가지급)
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경우에 소요되는 타겟 시스템 제작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타겟 시스템 제작비용을 원사업자가 먼저 부담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비용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트 후 납품을 요구할 경우 타겟 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노무비 등 직접 비용은 수요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제5조(기본보수의 지급) ② 타겟 시스템 제작비용은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해설

임베디드시스템의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인 임베디드SW의 테스트는 시뮬레이터와 실제 타겟 시스템의 두 가지로 이뤄진다. 그러므로 타겟 시스템의 제작비용은 발주자 부담이 원칙이나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발생한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2) 부당유인 금지(제32조)

가. 조문 내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2014년 전자부품연구원 임베디드시스템 SW개발 (성과보수 추가지급)	2019년 공정위 SW사업 표준하도급
제00조(부당유인 금지) ① 발주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종료 후 1년간 본 개발계약에 참여한 원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단,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의 위기로 인력구조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내에 원사업자의 개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년간의 급여를 원사업자에게 배상한다.	제13조(부당유인 금지) ① 수요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종료 후 1년간 본 개발계약에 참여한 공급자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단, 공급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의 위기로 인력구조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요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내에 공급자의 개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년간의 급여를 공급자에게 배상한다. .	제40조(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채용 제한)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인력 중 이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의 업무에 국한한다)를 담당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의 위기로 인력구조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해설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SW사업 종료 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수인력의 채용 외에도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함께 원사업자의 기술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원사업자는 우수인력의 퇴사 시 경업금지약정 또는 전직금지약정을 맺기도 하나, 직접적으로 발주자에게 해당 사업 참여 인력의 채용금지 의무를 부과하기를 원한다. 참고로 임베디드SW 업체들은 IT서비스와 상용SW 업체들 보다 영세하고 발주자는 제조 분야의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해당 조문의 필요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직금지약정은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취지이긴 하나 무기한적인 전직금지약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당한 지가 문제된다. 전직금지기간은 영업비밀의 존속기간 이내여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이며⁵⁰⁾, 법원은 별도의 대가 지급이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보통 1년 이하의 기간을 유효하게 보고 있다.⁵¹⁾ 2014년 전자부품연구원이 발표한 임베디드SW 개발 표준 계약서에서도 1년 간의 인력채용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따랐는데,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인력채용 금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성과보수 추가지급(제33조 ~ 제35조)

가. 조문 내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2014년 전자부품연구원 임베디드시스템 SW개발 (성과보수 추가지급)
제33조(성과금)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금액 외에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탑재된 발주자의 제품의 매출액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② 성과금의 산정은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제4조(성과보수) ① 수요자는 제3조 제1항의 기본보수 이외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② 성과보수의 산정은 수요자의 매출수량 또는

50) 장경수(2007), “이슈 노동법 해설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 노동법률 2007년 3월

51)정차호, 박지인(2018), “경업금지약정에서의 대가(반대급부)의 필수성 - 서울고등법원 2016라21261 결정의 파장은? -”, 인권과정의 2018년 2월

뉴스톱, 2019.12.10.자 “전직 금지 유효기간은 보통 1년...최근 2년 판례도 나와” 기사 참조

링크 :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

가 탑재된 발주자 제품의 매출수량 또는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기준에 의한다. ③ 성과금은 1년을 4분기로 하여 분기별로 산출하고 매분기 종료일(3.31, 6.30, 9.30, 12.31)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④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의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 발주자는 검증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자료의 제공은 원사업자의 검증을 요청한 서면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수량기준 성과금 산정) 제35조 (금액기준 성과금 산정)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2 또는 제4조3에 의한다. ③ 성과보수는 1년을 4분기로 하여 분기별로 산출하고 매분기 종료일(3.31, 6.30, 9.30, 12.31)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④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요자의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 검증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수요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자료의 제공은 공급자의 검증을 요청한 서면이 수요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수량기준 성과보수 산정) 제4조의3 (금액기준 성과보수 산정)
--	--

나. 해설

보통 정보시스템 분야는 구축사업과 유지관리사업 각각의 금액이, 상용SW 분야는 공급/구축사업에서 기본금액, 사용자나 CPU 등의 정보시스템 환경에 따른 추가금액 그리고 유지관리서비스 비용이 매출원이 된다. 임베디드SW는 순수한 개발보수 외에 해당 임베디드SW가 탑재된 발주자 제품의 판매성과가 정량적으로 측정되므로 그 중 일부를 보수로 지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2014년 전자부품연구원의 임베디드SW 표준계약서 중 성과보수 조문을 도입하였다.

제6절 정보시스템 및 상용SW 유지관리사업

정보시스템과 상용SW는 유지관리사업이 자주 행해지고 있어서 이를 위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개발/구축 사업계약서와 유사한 조문이 많아서 다른 조문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1. 과업과 대금 관련

(1) 정의(제2조)

가. 조문 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내용서”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등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과업의 범위,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과업내용서는 이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개별과업”이란 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업데이트(Update)”란 기존 정보시스템의 하차보수, 그 밖에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4. “일상지원”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상 문제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내용서”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등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과업의 범위,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과업내용서는 이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개별과업”이란 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업데이트(Update)”란 상용소프트웨어의 하차보수, 그 밖에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4. “일상지원”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운영상 문제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의미한다. 7. “메이저 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이 계약의 대상인 상용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을 X,Y,Z로 명하는 경우 첫 자리(X)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8. "마이너 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이 계약의 대상인 상용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 자리(X) 이외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해설

개발/구축사업과는 서비스수준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가 과업내용서 중 하나로 추가되었다. 유지관리사업은 특정기간 단위로 검사한 후 대금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개별과업을 정의하였고, 유지관리사업의 구체적인 항목들의 용어를 각각 정의하였다. 아울러 상용SW에서는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어 메이저 업그레이드와 마이너 업그레이드의 정의가 더 추가되었다.

(2) 과업내용서의 교부 등(제5조)

가. 조문 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제5조 (과업내용서의 교부 등)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과업내용서를 교부한다. 1.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2.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상의 하자에 대한 보수 및 그 하자로 인한 장애의 복구 및 지원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6. 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② 원사업자의 과업범위에 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과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과업내용서의 교부 등)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과업내용서를 교부한다. 1.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2. 상용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한 보수 및 그 하자로 인한 장애의 복구 및 지원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과 마이너 업그레이드 ② 이 계약에 따른 원사업자의 과업범위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추가되는 개발/구축 서비스를 제1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이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2항을 통해 추가되는 개발/구축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시킨다. ④ 원사업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지며, 그 과업을 자격있는 인력이 수행하도록 한다.	1. 메이저 업그레이드 2. 상용소프트웨어를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3. 장애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점검 4. 상용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원사업자 인력의 발주자 작업장소 상주 등 인력 투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비스를 제1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이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시킨다. ④ 원사업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지며, 그 과업을 자격있는 인력이 수행하도록 한다.

나. 해설

개발/구축 사업의 과업내용서는 계약체결 후에 작성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일부가 특정되지 않는 과업내용서에 대비한 조항들이 많았지만,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많이 축소하였다. 정보시스템과 상용SW의 유지관리사업은 차이는 조금 존재한다. 정보시스템 운영에는 인력투입이 많이 필요해서 기본적인 과업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상용SW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유상계약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유지관리계약과 추가 개발/구축사업계약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지관리사업은 특히 담당인력의 자격보유 여부가 중요할 수 있어 개발/구축 사업과는 달리 과업을 자격있는 인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3) 과업내용과 계약의 변경(제6조)

가. 조문 내용

정보시스템/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제6조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	제7조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

정보시스템/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과업 및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업 변경 시 양 당사자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이 달라져야 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이나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원사업자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제1항에서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발주자가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그 내용대로 이행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계약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⑤ (동일)	하거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합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설계 또는 구현이 진행 중인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감소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때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기존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과업내용 중 과업범위, 과업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아직 설계 또는 구현이 시작되지 않은 과업의 축소 또는 과업물량의 감소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원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 또는 이 조에 따른 과업변경에 따라 다시 확정된 계약조건이 이 계약과 다른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이나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발주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과업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⑦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일정기한을 정한 후 계약상대방이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⑨ (동일)

나. 해설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조문의 전체 취지는 개발/구축 사업과 동일하다. 재개발 또는 기능추가 등의 개발 성격의 과업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유지관리사업에서의 과업내용이나 계약변경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아 간소화하였다. 또한 개발사업과 달리 인력 기반 계약이 아직까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걸 감안하여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사업 표준계약서에 있는 인건비절감에 따른 감액을 금지하는 계약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4) 대금의 결정 및 조정(제7조)

가. 조문 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제7조 (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월, 분기, 반기)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과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과업이 변경 혹은 증가하여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 제1항 제2호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비용을 발주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단, 하자임이 인정된 경우 발주자는 소요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의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1.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불가항력에 의한	제7조 (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월, 분기, 반기)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과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과업이 변경 혹은 증가하여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 제1항 제2호의 “상용소프트웨어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비용을 발주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단, 하자임이 인정된 경우 발주자는 소요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상용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1.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불가항력에 의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의 손상 2. 원사업자에 의하지 않은 보수, 개조, 기구변동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손상 ⑥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제5항 각 호의 손상에 따른 발주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한다. ⑦ 발주자는 제4항과 제5항의 "소요비용"을 익월 말일까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상용소프트웨어(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동작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손상 2. 원사업자에 의하지 않은 보수, 개조, 기구변동 등으로 인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손상 3. 원사업자가 정하지 않은 타 기기를 접속하여 발생한 손상 4. 양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설비 및 설치환경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동 상태 ⑥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제5항 각 호의 손상에 따른 발주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한다. ⑦ 발주자는 제4항과 제5항의 "소요비용"을 익월 말일까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2. 작업환경과 과업이행

(1) 작업장소(제10조)

가. 조문 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제10조 (작업장소)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소속 인력을 근무(일시적 근무도 포함한다)하도록 하며,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소속 인력이 근무(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사업자의 인력이 근무하는 경우,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상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도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작업장소에서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신고하며,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작업장소) ① 원사업자는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 소속 인력을 근무(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다)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원사업자 인력이 근무(일시적 근무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사업자의 인력이 근무하는 경우,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상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도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작업장소에서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신고하며,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해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원사업자의 상주근무 관행이 어느정도 존재하지만, 상용SW 유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서는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원사업자의 사업장(원격/재택 근무 포함) 근무를 예외로 하였고 상용SW 유지관리사업은 반대로 하였다.

(2) 과업수행의 관리감독(제11조), 발주자의 관리권한(제12조)

가. 조문 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제11조 (과업수행의 관리감독) ①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현장관리인")를 선임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원사업자는 선임된 현장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③ 발주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관리인에게 행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하며, 제3자가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거나 제3자가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배상한다. ⑤ 원사업자는 소속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	제11조 (작업장소) ④ 발주자가 작업장소를 지정한 경우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현장관리인")를 선임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⑤ 원사업자는 선임된 현장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⑥ 발주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관리인에게 행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하며, , 제3자가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거나 제3자가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배상한다. 제12조 (인력관리) ②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진다.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기타 사회보험법령 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발주자의 관리권한)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 소속 인력의 기술수준이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담당 인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교체인력은 기존 인력의 기술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제1항의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2조 (사업수행 시 관리감독)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해설

유지관리사업 계약서의 제11조(과업수행의 관리감독)과 제12조(발주자의 관리권한)은 개발/구축사업 계약서의 작업장소와 인력관리 조문을 토대로 구성했다. 유지관리사업 계약서 제12조(발주자의 관리권한)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음을 선언한 것은 동일하나, 인력의 교체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개발/구축 사업과 다른 부분인데, 이는 공정위의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0조(유지·관리인력의 전문성 등)에서 인력의 교체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였다.

(3) 유지관리의 중지와 지체상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용SW도 동일)
제16조(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의 중지등) ① 원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선금금, 기성금 또는 추가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의 중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용SW도 동일)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유지·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 ②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등으로 인해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붕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원부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수 없었던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④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계약 이행보증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공정위의 SW사업 유지관리 분야 표준하도급 계약서에서는 제53조(지체상금)에서 수급사업자가 유지관리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정당하게 유지관리를 중지한 기간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지관리사업에서 발주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

제4장 결론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 말에는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식적인 하위법령은 아니지만 민간부문의 SW사업에 공정계약의 관행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상용SW와 정보시스템 분야의 개발/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표준계약서 4종, 임베디드SW 개발사업 표준계약서 1종을 개발하였다.

SW진흥법은 SW산업진흥법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부개정되었다. 그래서 현행 SW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들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조문들 위주로 하위법령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SW진흥법 시행 시점에 무난하게 모든 하위법령들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SW사업 표준계약서는 상용SW, 정보시스템, 임베디드SW 분야 위주로 공정위의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중심으로 다른 분야의 표준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개발되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주로 발주자가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을 위한 것이어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원도급 관계를 전제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다. SW개발 또는 유지관리의 도급사업에서 불공정 사례들을 충실히 수집한 후 이의 발생을 방지하는 조항들을 충실히 작성했으며, SW사업에서 유용성이 낮은 내용들은 삭제하여 표준계약서를 간소화하였다. 이 표준계약서들을 토대로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보다 나은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19~’ 23)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법률자문사례집”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1),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관계부처 합동(2017),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19),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

3. 14.

문화체육관광부(2015), “알기쉬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2019),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법제처(2019),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2019년 4월

법제처a(2019), “법령 입안·심사기준”, 2019년 4월

이현승 외 2인(2018), “SW진흥법 입법지원연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장경수(2007), “이슈 노동법 해설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 노동법률 2007년 3월

전자부품연구원(2013), “임베디드SW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전자부품연구원(2014), “임베디드SW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발”

정우석(2014), “공공단체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 공공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정구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차호, 박지인(2018), “경업금지약정에서의 대가(반대급부)의 필수성 - 서울고등법원 2016라 21261 결정의 파장은? -”, 인권과정의 2018년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2016), “이야기산업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행정안전부(2019),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부 록

SW사업 표준계약서 초안 조문비교표(SW개발 분야)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사업’ (이하 ‘이 계약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개발, 구축 등 사업’ (이하 ‘이 계약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이식 등 사업’ (이하 ‘이 계약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내용서”란 공급내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등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 계약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 의해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인도받는 이 계약의 최종적인 목적물을 말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내용서”란 공급내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등 명칭과는 상관없이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 계약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 의해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인도받는 이 계약의 최종적인 목적물을 말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내용서”란 공급내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등 명칭과는 상관없이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이 계약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 의해 발주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인도받는 이 계약의 최종적인 목적물을 말한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3.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납기”란 원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를 위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기일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5. “수령”이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비용”이란 계약목적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검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검사장비 등의 구입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7.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납기”란 원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를 위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기일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5. “수령”이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비용”이란 계약목적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검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검사장비 등의 구입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7.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총괄검사”란 계약목적물을 포함하여 발주자가 완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3.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납기”란 원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를 위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기일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5. “수령”이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비용”이란 계약목적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검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검사장비 등의 구입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7.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란 각종 전자제품이나 정보기기 등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② 전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른다.	9.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발주자의 설치 환경에 정착/연동시키기 위하여 재구성 또는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른다.	자제어시스템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타겟 시스템(Target System)”이란 이 계약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전자제어시스템 또는 전자제어시스템을 포함한 발주자의 제품을 말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을 준수한다.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을 준수한다.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을 준수한다.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효력)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효력)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효력)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① 양 당사자는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의에 따라 이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특약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방이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이 성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① 양 당사자는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의에 따라 이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특약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방이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이 성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① 양 당사자는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의에 따라 이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특약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방이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이 성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5조 (과업내용서의 확정) ① 발주자는 제안요청서와 원사업자의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서를 확정한다. 과업내용서에는 모든 과업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의 일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 과업내용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사업자에게 과업내용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게 된 사유와 장래에 과업내용을	제5조 (과업내용서의 확정) ① 발주자는 제안요청서와 원사업자의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서를 확정한다. 과업내용서에는 모든 과업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의 일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 과업내용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사업자에게 과업내용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게 된 사유와 장래에 과업내용을	제5조 (과업내용서의 확정) ① 발주자는 제안요청서와 원사업자의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과업내용서를 확정한다. 과업내용서에는 모든 과업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의 일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 과업내용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사업자에게 과업내용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게 된 사유와 장래에 과업내용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특정할 기일(이하 ‘예정기일’이라 한다)로 정하여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예정기일은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특약으로 설계완료일이 명시된 경우에는 설계완료일로 한다) 있어야 하며, 예정기일이 되어도 발주자가 과업내용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특정하여 과업내용서를 확정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항의 예정기일 이전이라도 발주자에게 발급 당시 특정되지 않은 과업내용을 특정하여 과업내용서를 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초 위탁된 과업의 범위가 현저히 변경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2. 원사업자의 과업 진척율이 50%에 도달한 경우 ⑥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확정된 과업내용서를 토대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확정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진다.	특정할 기일(이하 ‘예정기일’이라 한다)로 정하여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예정기일은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특약으로 설계완료일이 명시된 경우에는 설계완료일로 한다) 있어야 하며, 예정기일이 되어도 발주자가 과업내용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특정하여 과업내용서를 확정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항의 예정기일 이전이라도 발주자에게 발급 당시 특정되지 않은 과업내용을 특정하여 과업내용서를 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초 위탁된 과업의 범위가 현저히 변경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2. 원사업자의 과업 진척율이 50%에 도달한 경우 ⑥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확정된 과업내용서를 토대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확정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진다.	특정할 기일(이하 ‘예정기일’이라 한다)로 정하여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예정기일은 전체 계약기간의 30% 이내(특약으로 설계완료일이 명시된 경우에는 설계완료일로 한다) 있어야 하며, 예정기일이 되어도 발주자가 과업내용을 특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특정하여 과업내용서를 확정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항의 예정기일 이전이라도 발주자에게 발급 당시 특정되지 않은 과업내용을 특정하여 과업내용서를 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초 위탁된 과업의 범위가 현저히 변경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2. 원사업자의 과업 진척율이 50%에 도달한 경우 ⑥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확정된 과업내용서를 토대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확정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제6조 (계약체결 후 상황변동)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관련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과업내용과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협의를 완료되면, 협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체결 후 상황변동)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관련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과업내용과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협의를 완료되면, 협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체결 후 상황변동)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관련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과업내용과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협의를 완료되면, 협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설계 또는 구현이 진행 중인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감소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7	제7조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설계 또는 구현이 진행 중인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감소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7	제7조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거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설계 또는 구현이 진행 중인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변경(과업의 추가 또는 감소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7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과업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때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기존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결정한다. ④ 발주자는 과업내용 중 과업범위, 과업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아직 설계 또는 구현이 시작되지 않은 과업의 축소 또는 과업물량의 감소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원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 또는 이 조에 따른 과업변경에 따라 다시 확정된 계약조건이 이 계약과 다른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일정기한을 정한 후 계약상대방이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하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과업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때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기존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결정한다. ④ 발주자는 과업내용 중 과업범위, 과업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아직 설계 또는 구현이 시작되지 않은 과업의 축소 또는 과업물량의 감소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원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 또는 이 조에 따른 과업변경에 따라 다시 확정된 계약조건이 이 계약과 다른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일정기한을 정한 후 계약상대방이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하	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대로 과업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때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기존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결정한다. ④ 발주자는 과업내용 중 과업범위, 과업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아직 설계 또는 구현이 시작되지 않은 과업의 축소 또는 과업물량의 감소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원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⑥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확정 또는 이 조에 따른 과업변경에 따라 다시 확정된 계약조건이 이 계약과 다른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보하거나, 일정기한을 정한 후 계약상대방이 해당 기한 내에 회신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지 않으면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⑧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이나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⑨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과업의 변경에 관해 합의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 않으면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⑧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이나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⑨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과업의 변경에 관해 합의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 않으면 과업내용이나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⑧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이나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⑨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과업의 변경에 관해 합의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이 계약의 이행 대가로 계약 전문과 같이 원사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금액의 30퍼센트 이상으로 계약 전문에서 정한 선급금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계약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잔금청구는 검사에 합격한 때에 한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영업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추가로 5일까지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주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발주자가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이 계약의 이행 대가로 계약 전문과 같이 원사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전문에서 정한 선급금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계약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잔금청구는 검사에 합격한 때에 한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영업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추가로 5일까지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주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발주자가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제8조 (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이 계약의 이행 대가로 계약 전문과 같이 원사업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전문에서 정한 선급금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계약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잔금청구는 검사에 합격한 때에 한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영업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추가로 5일까지 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주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까지 대금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발주자가 제3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발주자가 이 조에서 정한 정당한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리 15.5%로 한다.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발주자가 이 조에서 정한 정당한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리 15.5%로 한다.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발주자가 이 조에서 정한 정당한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리 15.5%로 한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하여 발주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발주자는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사업자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하여 발주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발주자는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사업자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하여 발주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발주자는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사업자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제10조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① 발주자는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합의를 얻어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발주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0조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① 발주자는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합의를 얻어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발주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0조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① 발주자는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합의를 얻어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발주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발주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 (작업장소)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기에 미흡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장소를 작업장소로 지정한다.	제11조 (작업장소)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기에 미흡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장소를 작업장소로 지정한다.	제11조 (작업장소)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기에 미흡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장소를 작업장소로 지정한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②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작업장소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인력이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작업장소 내의 설비 등 전반적인 작업환경에 관한 안전 및 보건 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사업자의 인력은 작업장소에서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즉시 이를 신고하고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작업장소를 지정한 경우 원사업자는 현장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 ⑤ 원사업자는 선임된 현장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⑥ 발주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관리인에게 행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②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작업장소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인력이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작업장소 내의 설비 등 전반적인 작업환경에 관한 안전 및 보건 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사업자의 인력은 작업장소에서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즉시 이를 신고하고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작업장소를 지정한 경우 원사업자는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 ⑤ 원사업자는 선임된 현장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⑥ 발주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관리인에게 행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②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작업장소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인력이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작업장소 내의 설비 등 전반적인 작업환경에 관한 안전 및 보건 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사업자의 인력은 작업장소에서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즉시 이를 신고하고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작업장소를 지정한 경우 원사업자는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 ⑤ 원사업자는 선임된 현장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⑥ 발주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관리인에게 행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하거나 제3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배상한다.	하거나 제3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배상한다. ⑧ 원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발주자의 전산실 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제시하는 보안 및 안전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거나 제3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배상한다.
제12조 (사업수행 시 관리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자료에 기초하여 원사업자의 계약 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원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인력관리의무를 다한다. ④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제12조 (사업수행 시 관리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자료에 기초하여 원사업자의 계약 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원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인력관리의무를 다한다. ④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제12조 (사업수행 시 관리감독) ① 발주자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자료에 기초하여 원사업자의 계약 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원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인력관리의무를 다한다. ④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기타 사회보험법령 상의 책임을 진다.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기타 사회보험법령 상의 책임을 진다.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기타 사회보험법령 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하도급) ① 원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제3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제3자를 선정할 것’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하도급) ① 원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제3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제3자를 선정할 것’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하도급) ① 원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제3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제3자를 선정할 것’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납품)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한 납품기한에 계약 목적물을 납품한다. ② 원사업자는 납품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원사업자의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기조정이 불가항력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제14조 (납품)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한 납품기한에 계약 목적물을 납품한다. ② 원사업자는 납품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원사업자의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기조정이 불가항력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제14조 (납품)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협의한 납품기한에 계약 목적물을 납품한다. ② 원사업자는 납품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원사업자의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기조정이 불가항력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납기지연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일체의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체의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체의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수령 및 반품)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납품 또는 제공한 계약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의한 검사(발주자의 의뢰에 의한 제3자 검사를 포함한다)가 개시된 때, 이하 같다)에는, 수령증명서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②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반품하지 아니한다. ③ 반품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또 다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계약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경우 3. 발주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경우 4. 발주자가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5조(수령 및 반품)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납품 또는 제공한 계약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의한 검사(발주자의 의뢰에 의한 제3자 검사를 포함한다)가 개시된 때, 이하 같다)에는, 수령증명서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②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반품하지 아니한다. ③ 반품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또 다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계약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경우 3. 발주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경우 4. 발주자가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5조(수령 및 반품)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납품 또는 제공한 계약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의한 검사(발주자의 의뢰에 의한 제3자 검사를 포함한다)가 개시된 때, 이하 같다)에는, 수령증명서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②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반품하지 아니한다. ③ 반품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또 다른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계약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경우 3. 발주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경우 4. 발주자가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이유로 계약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제16조 (검사)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과업내용서가 확정된 다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검사의 대상은 과업내용서의 과업(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함)으로 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을 수령한 날 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대상 계약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합의하여 별도의	제16조 (검사)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과업내용서가 확정된 다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검사의 대상은 과업내용서의 과업(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함)으로 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을 수령한 날 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대상 계약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합의하여 별도의	제16조 (검사)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과업내용서가 확정된 다음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검사의 대상은 과업내용서의 과업(과업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함)으로 한정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을 수령한 날 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검사 결과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대상 계약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합의하여 별도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검사기간 및 통지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자 또는 제3자에 의한 검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검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검사기간 및 통지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자 또는 제3자에 의한 검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검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검사기간 및 통지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자 또는 제3자에 의한 검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검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제17조 (검사 후 인수) ① 발주자는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검사결과와 통지 시에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2회에 한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는 불합격된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조치에는 양당사자가 협의한 기간 내에 원사업자가 계약목	제17조 (검사 후 인수) ① 발주자는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검사결과와 통지 시에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2회에 한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는 불합격된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조치에는 양당사자가 협의한 기간 내에 원사업자가 계약목	제17조 (검사 후 인수) ① 발주자는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지체없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검사결과와 통지 시에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대한 소명이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2회에 한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는 불합격된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조치에는 양당사자가 협의한 기간 내에 원사업자가 계약목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적물을 인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⑥ 계약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발주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적물을 인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⑥ 계약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발주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적물을 인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는 이를 원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⑥ 계약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발주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18조(계약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원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원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계약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원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원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계약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원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원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발주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계약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지체상금) ① 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제19조 (지체상금) ① 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제19조 (지체상금) ① 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을 1천분의 0.75와 지체일수를 곱하여 나온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계약기간 내에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개발 등의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 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 중 일부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과업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중단된 경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을 1천분의 0.75와 지체일수를 곱하여 나온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계약기간 내에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개발 등의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 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 중 일부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과업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중단된 경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을 1천분의 0.75와 지체일수를 곱하여 나온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계약기간 내에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개발 등의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 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 중 일부를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과업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계약이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계약이행이 중단된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3.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발주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4.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할 경우(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5. 기타 원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 검사 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다음날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3.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발주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4.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할 경우(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5. 기타 원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 검사 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다음날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3.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발주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4.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할 경우(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5. 기타 원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 검사 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다음날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20조(품질보증) ① 계약목적물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계약목적물이 이 계약 및 부속 서류(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원사업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품질보증) ① 계약목적물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계약목적물이 이 계약 및 부속 서류(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원사업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품질보증) ① 계약목적물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계약목적물이 이 계약 및 부속 서류(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 원사업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하자보수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검사를 완료하여 계약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제21조 (하자보수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검사를 완료하여 계약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제21조 (하자보수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검사를 완료하여 계약목적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즉시 무상으로 그 하자를 보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시스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계약목적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경우 5. 계약목적물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정보시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즉시 무상으로 그 하자를 보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시스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계약목적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경우 5. 계약목적물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주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즉시 무상으로 그 하자를 보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시스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계약목적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경우 5. 계약목적물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보며,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목적물이 탑재된 발주자 제품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상주 근무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스택의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주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유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유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에 유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양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발주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 ②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원사업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제2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양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발주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 ②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원사업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제2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양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발주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다. ②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원사업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경우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이 하자보수보증금 보다 큰 때에는 그 차액만큼을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이 하자보수보증금 보다 큰 때에는 그 차액만큼을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이 하자보수보증금 보다 큰 때에는 그 차액만큼을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지식재산권) ① 원사업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거나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별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생성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 중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및 지분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	제23조 (지식재산권) ① 원사업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거나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별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생성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 중 이 계약에 따라 커스터마이징된 부분을 포함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및 지분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	제23조 (지식재산권) ① 원사업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거나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별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생성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 중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및 지분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새로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2항의 소프트웨어 등 결과물을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계약목적물의 사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공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이 계약 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⑥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계약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24조 (기술지원 및 교육) ①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2항의 소프트웨어 등 결과물을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계약목적물의 사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공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이 계약 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⑥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계약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24조 (기술지원 및 교육) ①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2항의 소프트웨어 등 결과물을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계약목적물의 사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공익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이 계약 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⑥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와 제3자 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계약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24조 (기술지원 및 교육) ① 원사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제2항의 교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따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 발주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이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2. 발주자가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 3. 발주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이 이 계약 이행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 제25조 (기술자료 제공)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제2항의 교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따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 발주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이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2. 발주자가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 3. 발주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이 이 계약 이행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 제25조 (기술자료 제공)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계약종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제2항의 교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따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 발주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이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2. 발주자가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 3. 발주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이 이 계약 이행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 제25조 (기술자료 제공)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으로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가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으로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가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으로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가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⑤ 발주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4항제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⑤ 발주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4항제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⑤ 발주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4항제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3. 기타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목적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	제26조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3. 기타 개발업무 담당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결과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제26조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3. 기타 개발업무 담당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결과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치기관에게 원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임치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치기관에게 원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임치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치기관에게 원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27조 (비밀유지)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제공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27조 (비밀유지)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제공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27조 (비밀유지)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제공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④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⑤ 비밀준수기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④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⑤ 비밀준수기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④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⑤ 비밀준수기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제28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	제28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	제28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과업변경의 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원사업자가 최초 예상했던 과업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술력 및 인력으로 동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동 과업수행으로 인해 원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주는 경우 3.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과업변경의 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원사업자가 최초 예상했던 과업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술력 및 인력으로 동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동 과업수행으로 인해 원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주는 경우 3.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과업변경의 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원사업자가 최초 예상했던 과업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술력 및 인력으로 동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동 과업수행으로 인해 원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주는 경우 3.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4.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부분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⑦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주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이 행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손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부분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⑦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주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부분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⑦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주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며,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손해배상)	제29조 (손해배상)	제29조 (손해배상)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9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9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9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법적 지위와 분쟁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제30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분쟁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제30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분쟁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5.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 (상용소프트웨어 사용의 특약)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가권한이 있음을 보증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동 사용허가권한을 입증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용기간 동안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이 해당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료의 내용과 일치함을 보증한다. ③ 계약에 의하여 사용 허가된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권한을 갖는다. 1. 기계 및 관련 장치에 상용소프트웨어를 기억, 전송 또는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 2. 상용소프트웨어 사용의 보조로서 제공되는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고 복사하는 것 3. 사용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	제31조 (타겟 시스템 제작비용)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가 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 계약목적물을 타겟 시스템에 탑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경우에 소요되는 타겟 시스템 제작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타겟 시스템 제작비용을 원사업자가 먼저 부담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비용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④ 발주자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한 백업(Back-up) 및 발주자의 직원 등에 대한 교육용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 및 그 기술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	
	제32조(원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발주자가 총괄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주자에게 협조한다. 단, 협조의 범위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이 계약의 계약목적물과 그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의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원사업자와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의 원사업자의 협조의무는 발주자의 대금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잔금의 10%로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를 넘지 않는다.	제32조(부당유인 금지) ① 발주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종료 후 1년간 본 개발계약에 참여한 원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단,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의 위기로 인력구조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내에 원사업자의 개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년간의 급여를 원사업자에게 배상한다.
		제33조(성과금)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금액 외에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탑재된 발주자의 제품의 매출액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② 성과금의 산정은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탑재된 발주자 제품의 매출수량 또는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기준에 의한다. ③ 성과금은 1년을 4분기로 하여 분기별로 산출하고 매분기 종료일(3.31, 6.30, 9.30, 12.31)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④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의 제품의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 발주자는 검증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자료의 제공은 원사업자의 검증을 요청한 서면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수량기준 성과금 산정) ① 수량기준 성과금은 다음 1호와 2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제품 개발 후 누적 판매수량 ()개까지는 출하수량 일 개당 _____ 원을 곱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하여 산출한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2. 제품 누적 판매수량이 ()개를 초과할 때부터는 초과수량 일 개당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품의 판매수량은 원사업자가 집계한 판매수량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단위당 판매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제34조제3항의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제2항의 판매수량 통지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이 확정된 분기의 수량으로 간주한다.
		제35조 (금액기준 성과금 산정) ① 금액기준 성과금은 다음 1호와 2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제품 출시 후 누적 판매금액 ()원까지는 출하 금액의 _____%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2. 제품 누적 판매금액이 ()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초과한 금액의 _____%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품의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특정/범용) 임베디드SW 개발 사업
		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제34조제3항의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제2항의 판매금액 통지 후 반품 등의 원인으로 판매금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 등이 확정된 분기의 판매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SW사업 표준계약서 초안 조문비교표(SW유지관리 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이하 ‘이 계약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내용서”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등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과업의 범위,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과업내용서는 이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개별과업”이란 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업데이트(Update)”란 기존 정보시스템의 하자보수, 그 밖에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4. “일상지원”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상 문제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이하 ‘이 계약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공정하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업내용서”란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Service Level Agreement) 등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과업의 범위,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과업내용서는 이 계약 체결 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개별과업”이란 이 계약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3. “업데이트(Update)”란 상용소프트웨어의 하자보수, 그 밖에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4. “일상지원”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운영상 문제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의미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5.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6.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른다.	5.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6.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7. “메이저 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이 계약의 대상인 상용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을 X,Y,Z로 명하는 경우 첫 자리(X)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8. “마이너 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이 계약의 대상인 상용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 자리(X) 이외의 버전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한다. ②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효력) ① 양 당사자는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의에 따라 이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특약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방이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이 성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5조 (과업내용서의 교부 등)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과업내용서를 교부한다. 1.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2.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상의 하자에 대한 보수 및 그 하자로 인한 장애의 복구 및 지원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제1호의 품질 지표, 기준 및 그 측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6. 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③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특약의 성립 및 효력) ① 양 당사자는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합의에 따라 이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제3조 제2항의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특약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방이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계약상대방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약이 성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5조 (과업내용서의 교부 등)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과업내용서를 교부한다. 1.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지표, 기준 및 측정방법 2. 상용소프트웨어의 하자에 대한 보수 및 그 하자로 인한 장애의 복구 및 지원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상용소프트웨어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과 마이너 업그레이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② 원사업자의 과업범위에 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과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별도의 유상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추가되는 개발/구축 서비스를 제1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이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2항을 통해 추가되는 개발/구축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지며, 그 과업을 자격있는 인력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과업 및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업 변경 시 양 당사자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이 달라져야 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이나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원사업자가 동	② 이 계약에 따른 원사업자의 과업범위에 다음 각 호의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한다. 1. 메이저 업그레이드 2. 상용소프트웨어를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3. 장애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점검 4. 상용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원사업자 인력의 발주자 작업장소 상주 등 인력 투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서비스를 제1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이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2항 각 호의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권리를 가지며, 그 과업을 자격있는 인력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과업 및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업 변경 시 양 당사자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을 다시 확정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이 달라져야 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과업내용 또는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계약상대방에게 변경된 과업이나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발주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원사업자가 동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제1항에서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발주자가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그 내용대로 이행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계약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⑤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과업의 변경에 관해 합의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제1항에서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발주자가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그 내용대로 이행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계약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⑤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과업의 변경에 관해 합의한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한지 1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 협의를 시작한 지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월, 분기, 반기)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과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과업이 변경 혹은 증가하여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	제7조 (대금의 결정 및 조정) ① 이 계약의 계약금액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월, 분기, 반기)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과업수행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원사업자의 과업이 변경 혹은 증가하여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청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 제1항 제2호의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단, 하자임이 인정된 경우 발주자는 소요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정보시스템의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1.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불가항력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손상 2. 원사업자에 의하지 않은 보수, 개조, 기구변동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손상 3. 원사업자가 정하지 않은 타 기기를 접속하여 발생한 손상 4. 양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설비 및 설치환경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동 상태 ⑥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제5항 각 호의 손상에 따른 발주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한다. ⑦ 발주자는 제4항과 제5항의 “소요비용”을 익월 말일까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청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④ 제5조 제1항 제2호의 “상용소프트웨어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단, 하자임이 인정된 경우 발주자는 소요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사업자가 상용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자는 해당 소요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1.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 불가항력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동작하는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손상 2. 원사업자에 의하지 않은 보수, 개조, 기구변동 등으로 인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손상 3. 원사업자가 정하지 않은 타 기기를 접속하여 발생한 손상 4. 양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설비 및 설치환경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가동 상태 ⑥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제5항 각 호의 손상에 따른 발주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한다. ⑦ 발주자는 제4항과 제5항의 “소요비용”을 익월 말일까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대금의 지급)	제8조 (대금의 지급)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① 대금은 제14조의 검사를 통과한 후 매월 정해진 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리 15.5%로 한다.	① 대금은 제14조의 검사를 통과한 후 매월 정해진 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연리 15.5%로 한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하여 발주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발주자는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사업자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계약이행보증금)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원사업자가 제1항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하여 발주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발주자는 지연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사업자의 보증금 납부를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작업장소)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소속 인력을 근무(일시적 근무도 포함한다)하도록 하며, 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소속 인력이 근무(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사업자의 인력이 근무하는 경우,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상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	제10조 (작업장소) ① 원사업자는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 소속 인력을 근무(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다)하도록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원사업자 인력이 근무(일시적 근무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사업자의 인력이 근무하는 경우,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상의 책임을 지며 원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자도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작업장소에서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신고하며,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도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작업장소에서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신고하며,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과업수행의 관리감독) ①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현장관리인”)를 선임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 2. 발주자와 과업수행에 관한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원사업자는 선임된 현장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③ 발주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관리인에게 행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하며, 제3자가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거나 제3자가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배상한다. ⑤ 원사업자는 소속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과업수행의 관리감독) ①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현장관리인”)를 선임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 2. 발주자와 과업수행에 관한 협의 3.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원사업자는 선임된 현장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③ 발주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관리인에게 행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하며, 제3자가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이 아닌 원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거나 제3자가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인 또는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배상한다. ⑤ 원사업자는 소속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발주자의 관리권한)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 소속 인력의 기술수준이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족하다	제12조 (발주자의 관리권한)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 소속 인력의 기술수준이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족하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담당 인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교체인력은 기존 인력의 기술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제1항의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③ 원사업자의 사정으로 담당 인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교체인력은 기존 인력의 기술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제1항의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3조(하도급) ①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제3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제3자를 선정할 것’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하도급) ①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계약 상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제3자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이 계약의 목적과 관계없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특정한 제3자를 선정할 것’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과업의 완료 및 검사) ① 이 계약의 과업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의 과업이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 서비스수준 유지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비스수준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이 계약의 서비스수준 목표에 미달하거나 기타 과업수행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개별과업 완료보고를 받은 후 검사에서 합격한 경	제14조 (과업의 완료 및 검사) ① 이 계약의 과업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② 이 계약의 과업이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 서비스수준 유지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비스수준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이 계약의 서비스수준 목표에 미달하거나 기타 과업수행 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개별과업 완료보고를 받은 후 검사에서 합격한 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우에 계약전문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개별과업을 완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제3자간 또는 원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계약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16조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3. 기타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우에 계약전문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개별과업을 완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원사업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제3자간 또는 원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계약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16조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3. 기타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상용소프트웨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④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치기관에게 원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④ 제1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치기관에게 원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제17조 (기술자료 제공)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으로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가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17조 (기술자료 제공)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이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으로 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발주자가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⑤ 발주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4항제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발주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⑤ 발주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4항제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비밀유지)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제공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④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⑤ 비밀준수기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으로부터	제18조 (비밀유지)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제공 후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④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⑤ 비밀준수기간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시점으로부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1년 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1년 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특약으로 정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해지)	제19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과업변경의 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원사업자가 최초 예상했던 과업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술력 및 인력으로 이 계약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 계약의 과업수행 시 원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과업변경의 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원사업자가 최초 예상했던 과업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술력 및 인력으로 이 계약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 계약의 과업수행 시 원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 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2. 발주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과업수행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과업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부분(해제 또는 해지 시점에 기성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과업의 이행 완료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⑦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과업수행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과업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부분(해제 또는 해지 시점에 기성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과업의 이행 완료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기성부분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⑦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제21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법적 지위와 분쟁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5.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법적 지위와 분쟁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2.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5.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비매품/무료



ISBN 978-89-6108-464-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의해 작성된 [SPRI 보고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